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Examination Progress and Highlights of the 2023 Tax Act Revision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총괄 | 신항진 |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 조세분석심의관
박연서 |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 세제분석2과장

작성 | 어수진, 강민지, 김호경, 박지원, 문석휘 | 추계세제분석관
박성은, 김문경,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 추계세제분석관
고은비, 태정림 | 추계세제분석관

지원·편집 | 이지은 | 행정실무원
김혜진 | 자료분석연구원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02) 6788-4744 | income41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1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12.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국회 세법심사는 11월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로 시작되어 약 한 달에 걸쳐 56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12월 20일에는 지방세 관련 세법 5건이, 12월 21일에는 국세 관련 세법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2024년부터 시행될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과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회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일리두기

1. '소득세'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개정 항목임
 2. '법인세'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개정 항목임
 3.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개정 항목임
 4. '자산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증권거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항목임
 5. '기타'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개정 항목임
 6. '지방세'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에 관한 법률 개정 항목임
 7. 다음 법률명에 대해서는 괄호 안의 약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음
국세기본법(국기법), 부가가치세법(부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별법)
 8.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의원안'으로,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9. 본 보고서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3년도) 대비 증감한 누적세수를 합산한 방식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금액임
 10. 개정연혁은 개정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11. 본 보고서의 '현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하며, '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함
-

차 례

I. 개 관 / 1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3
2. 심의 경과	7
가. 위원회 심사	7
나.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	11
다. 본회의 심의·의결	14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16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16
나.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24
4.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36
가.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36
나.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38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41
6.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44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 사항 / 47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48
가. 총괄	48
나. 주요 논의사항	50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72
가. 총괄	72
나. 주요 논의사항	73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89
가. 총괄	89
나. 주요 논의사항	90

차 례

4. 자산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등)	111
가. 총괄	111
나. 주요 논의사항	112
5. 기타세제(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118
가. 총괄	118
나. 주요 논의사항	119
6. 지방세제(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126
가. 총괄	126
나. 주요 논의사항	127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145

1.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147
가. 「소득세법」	147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8
다. 「조세특례제한법」	148
라. 「관세법」	151
마. 「국세기본법」	153
바. 「국세징수법」	154
사. 「지방세법」	154
아. 「지방세특례제한법」	154
2.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66
가. 「소득세법」	166
나. 「법인세법」	167
다. 「부가가치세법」	167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8
마. 「조세특례제한법」	168
바. 「관세법」	171
사. 「국세기본법」	171
아. 「국세징수법」	172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72

차 례

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3
카. 「지방세기본법」	173
타. 「지방세법」	173
파. 「지방세특례제한법」	174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 183

1. 부대의견	185
가.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7건	185
나. 「주세법」 부대의견: 1건	187
다. 「교육세법」 부대의견: 1건	187
라. 「관세법」 부대의견: 1건	187
2. 향후 논의과제	190

부 록 -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 197

표·그림 차례

〈표 차례〉

[표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4
[표 2]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8
[표 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9
[표 4]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안 심사 결과	10
[표 5]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 및 지정 결과	12
[표 6] 2023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심의 결과	14
[표 7]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금액 개정 주요 내용	16
[표 8]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개정 주요 내용	16
[표 9]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개정 주요 내용	17
[표 10] 맥주 등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8
[표 1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한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8
[표 12] 기업승계 증여세 납부시 연부연납 기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8
[표 13] 자녀장려세제 신청요건 및 지급액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9
[표 14] 월세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0
[표 1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0
[표 16]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1
[표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1
[표 18] 기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관련 개정 주요 내용	21
[표 19]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 주요 내용 ..	23
[표 20]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 주요 내용 ..	23
[표 21] 심사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법안의 합의 결과	24
[표 2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5
[표 23]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 주요 심사 의견	26
[표 24]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7
[표 25]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27

표·그림 차례

[표 2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28
[표 27]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29
[표 2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30
[표 2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1
[표 30]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32
[표 3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2
[표 32] 맥주·탁주 주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33
[표 33] 맥주·탁주 주세율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3
[표 34] 은행·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34
[표 35] 은행·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4
[표 36]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안	36
[표 37] 국회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38
[표 38]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4~2028년	41
[표 39]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42
[표 40] 2023년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43
[표 4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1
[표 42] 자녀장려금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3
[표 43] 자녀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6
[표 44]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58
[표 45]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기준 상향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0
[표 46]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2
[표 47] 소득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63
[표 48]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5
[표 49]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연혁	76
[표 50]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7
[표 51]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9

표·그림 차례

[표 5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80
[표 5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82
[표 54] 법인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83
[표 55] 맥주·탁주 주세율 연혁	91
[표 56] 맥주·탁주 주세율 변경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2
[표 57]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4
[표 58]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6
[표 59] 교육세 납세의무 금융·보험업자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8
[표 60]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99
[표 61]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 연혁	100
[표 62]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0
[표 63]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2
[표 64] 소비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103
[표 65]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2
[표 66]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113
[표 67]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5
[표 68] 자산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116
[표 69]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시기 조정 등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20
[표 70]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20
[표 71] 공매재산 취득시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21
[표 72] 기타 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122
[표 73]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28

표·그림 차례

[표 74]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0
[표 7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1
[표 76] 지방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132
[표 77] 의원발의안 중 개정세법에 반영된 안건의 심의 결과	156
[표 78] 2023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수정 결과	176
[표 79] 부대의견 채택 안건	188
[표 80]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199
[표 81] 2024년 총수입 변동 내용	200
[표 82] 2024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201
[표 83] 2024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202
[표 84] 2024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202

〈그림 차례〉

[그림 1] 자녀장려세제 지급 구조 변화: 자녀 1명 기준	19
--	----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개 관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 2023년 정기회에서 심의¹⁾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21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335건(기획재정위원회)
 - 심의대상 세법(21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 심의대상 법률안(335건)
 - 정부안 16건, 의원안 319건²⁾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6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8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 등
- 2023년 정기회에서 심의된 지방세 관련 세법은 총 5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234건(행정안전위원회)
 - 심의대상 세법(5개)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심의대상 법률안(234건)
 - 정부안 6건, 의원안 228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8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0건 등

1) 심의(審議)의 사전적 의미는 ‘심사(審査)하고 토의(討議)함’으로, 국회법은 본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의’(제93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사’(제58조)라는 용어를 사용함 (임종훈·이정은,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21.)

2) 이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 전체는 “의원안”,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표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명	주요 내용
「소득세법」 (5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이수진·김승원·김희재·송언석·서영교·전재수·김용민·유경준·정성호 의원안, 정부안)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강훈식·박광온·고용진·서영교·박성준·진선미·신동근 의원안)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김영주 의원안, 정부안) -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준호·김영주 의원안, 정부안) -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정점식·고용진·하영제·이달근·윤준병·신정훈·서삼석·배준영 의원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등 (김경만·김병욱 의원안, 정부안) - 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한도 상향 조정 (김희곤·양경숙·이인선·김태년·강병원 의원안, 정부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정부안)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의 소형주택 특례 일몰 연장 (정부안) -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추가 (유동수 의원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특례 확대 (박성준 의원안, 정부안)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한시적 상향 (정부안)
「법인세법」 (1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진선미 의원안, 정부안) - 수탁자 과세의 의무적 적용 등 (정부안) -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등 (정부안) - 본사·공장의 소재 지역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적용 (이원욱·구자근·김성원·윤영석 의원안) - 은행·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이성만·용혜인·양경숙 의원안)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요건 완화 (정부안) - 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 신설 (정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정부안) - 기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 타인기여 재산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법인을 통한 간접적 이익 포함 명시 등 (류성걸 의원안)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유형 변경 등 (정부안)
「부가가치세법」 (1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홍익표·배준영·전재수·한정애 의원안) -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고용진·김주영 의원안, 정부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부안)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변경 (김상훈 의원안) -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김교흥·양경숙 의원안)
「개별소비세법」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용 증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고용진·이인선 의원안) - 수소제조용 석유·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면제 (윤영석·고용진·이장섭 의원안)
「주세법」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주·맥주 세율의 변경 및 생맥주 경감제도 3년 연장 (정부안) - 증류주류 세율의 종량세로 전환 및 중소기업 제조 주류에 대한 세율 경감 (고용진 의원안)

법률명	주요 내용
「농어촌특별세법」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 연장 (한병도 · 안호영 의원안, 정부안) - 신탁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진선미 의원안)
「국세기본법」 (1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등 (한무경 의원안, 정부안) -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조문 명확화 (박광온 의원안, 정부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 및 소기업 가산세 한도 하향 조정 (진선미 의원안, 정부안) - 조세불복 시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허용 (정부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시 해당 납세자에 통지 등 (강준현 · 김승원 의원안)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미심사 결정사유 추가 (김수홍 의원안, 정부안)
「관세법」 (16건) 및 「국가관세정보화 진흥원법안」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정부안)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정부안)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김주영 ·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류성걸 의원안, 정부안) - 관세 체납 · 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양경숙 · 김주영 의원안, 정부안)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설 (배준영 의원안) -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 (정부안) -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정부안) -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정부안)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우범화물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류성걸 의원안)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우원식 · 류성걸 의원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등 (정부안)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김주영 의원안) - 해외신탁 자료제출 의무 도입 (정성호 의원안, 정부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정부안)
「조세특례 제한법」 (186건)	<p>[소득세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관련 납입액 한도 상향 (김영선 의원안, 정부안) -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 조정 (서삼석 · 윤영석 · 진선미 의원안)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공제율, 한도 상향 등 (전재수 · 고용진 · 박성준 · 양금희 · 유동수 · 정태호 의원안) -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김용민 · 조정식 · 정태호 · 김형동 의원안, 정부안)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시 지급금액 인상 (정부안)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상향 등 (한병도 의원안, 정부안) - 전통시장 · 문화비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재수 · 조해진 의원안, 정부안) -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 특례 신설 (정태호 · 진선미 의원안)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홍영표 의원안)

법률명	주요 내용
	<p>[법인세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홍정민 의원안, 정부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이상헌·배현진·김윤덕·황보승희·이용·이용호·홍성국·윤영찬·한병도·이병훈·배준영·윤두현·변재일·박대출 의원안, 정부안)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정부안)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시 손금산입 허용 (정부안)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양금희 의원안, 정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 (김용판·윤두현·김병욱 의원안, 정부안)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윤영석·조해진·진선미 의원안, 정부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양기대·홍영표·김영선·정일영·김상훈·구자근·박상혁·이정문·유익동 의원안) -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 (양경숙 의원안) - 기획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홍성국·이장섭·배준영·구자근·박성민 의원안) <p>[소비세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정부안) -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정부안)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동수 의원안)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도를 환급제도로 변경 (양기대 의원안) <p>[자산세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정부안) - 조세범에 대한 기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배제 규정 신설 (정부안) - 전통사찰보존지 내 전통사찰 소유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윤영석 의원안)
<p>기타 세법 (18건)</p>	<p>- 「종합부동산세법」(1건), 「인지세법」(1건), 「교육세법」(2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3건), 기타 절차법 등 11건(「국세징수법」(7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1건), 「조세법 처벌법」(1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1건), 「관세사법」(1건))</p>
<p>지방세 분야 (234건)</p>	<p>- 「지방세기본법」(20건), 「지방세징수법」(5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건), 「지방세법」(60건), 「지방세특례제한법」(148건)</p>

2 심의 경과

가. 위원회 심사

(1)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획재정위원회

- (법률안 상정) 국세 관련 법률안 총 212건 신규 상정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3.11.13.) 212건 상정
- (소위원회 심사) 제21대 국회 계류 법률안 155건 및 신규 소위회부 법률안³⁾ 180건(소위 직회부 2건 포함) 등 총 335건 심사
 - 조세소위원회 총 8회 개최
 - 11.15.(수), 11.17.(금), 11.20.(월), 11.22.(수), 11.24.(금), 11.27.(월), 11.29.(수), 11.30.(금)
- (법률안 의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2023.11.30.) 및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3.11.30.)에서 국세 관련 법률안(15건) 의결
 - 원안가결 3건(「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 수정가결 2건(「법인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대안가결 10건(「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 신규 소위회부 법률안은 제410회 국회(정기회)에서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로 회부된 법률안을 의미함

[표 2]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연번	법률안명	심사대상 안건	처리 현황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대안가결 (의원안 38+정부안)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수정가결(정부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안가결 (의원안 2+정부안)
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안가결 (의원안 6+정부안)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
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안가결(정부안)
8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원안가결(정부안)
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안가결(정부안)
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안가결 (의원안 3+정부안)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대안가결 (의원안 148+정부안)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안가결 (의원안 7+정부안)
1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안가결 (의원안 2+정부안)
1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수정가결(정부안)
1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	-
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안가결 (의원안 11+정부안 2)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안가결 (의원안 2+정부안)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안가결 (의원안 1+정부안)
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
2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
21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1	대안반영폐기

(2)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행정안전위원회

- (법률안 상정) 지방세 관련 법률안 총 62건 신규 상정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3.9.20.) 24건 상정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3.11.9.) 25건 상정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3.11.23.) 13건 상정
- (소위원회 심사) 제21대 국회 계류 법률안 178건 및 신규 소위회부 법률안⁴⁾ 56건(소위 직회부 4건 포함) 등 총 234건 심사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총 7회 개최하여 이 중 지방세 관련 법률안 4회 심사 - 9.18.(월)⁵⁾, 12.5.(화), 12.6.(수), 12.7.(목)
- (법률안 의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12.7.) 및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3.12.8.)에서 지방세 관련 법률안(5건) 의결
 - 원안가결 1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1건(「지방세징수법」)
 - 대안가결 3건(「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표 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연번	법률안명	심사대상 안건	처리 현황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대안가결 (의원안 2+정부안)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5	수정가결(정부안)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원안가결(정부안)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대안가결 (의원안 1+정부안)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대안가결 (의원안 82+정부안)

4) 신규 소위회부 법률안은 제410회 국회(정기회)에서 제1차, 제7차,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로 회부된 법률안을 의미함

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서, 기존에 계류되어 있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및 소위 직회부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대하여 논의함

(3)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

- 국세 관련 법률안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15건 중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 14건⁶⁾은 심사기간(2023.11.30.)이 도과하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2023.12.1.)⁷⁾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⁸⁾

- 지방세 관련 법률안으로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5건은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3.12.19.) 심사를 거쳐 가결

[표 4]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안 심사 결과

연번	법률안명	심사대상 안건	심사 결과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행안위: 대안)	수정가결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1 (행안위: 정부안 수정가결)	수정가결
3	「지방행정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행안위: 정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행안위: 대안)	수정가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행안위: 대안)	수정가결

6) 정부안(원안) 3건, 정부안(수정안) 1건, 위원회 대안 10건으로 총 14건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835)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음에 따라 제외함

7)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

8)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

나.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

-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경과
 -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은 총 35건으로 이 중 국세 관련 법률안은 31건
 - 국세 관련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제출안 14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안 17건이 지정신청 됨
 - 그 외 비조세 부문의 지정신청 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횡재세 관련 법률안 3건,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의원안 4건임
 - (2023.11.30.)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신청 된 법률안 35건 중 22건(국세 관련 법률안 21건, 비조세 법률안 1건)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 국세 관련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제출안 14건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안과 병합심사되었던 의원안 7건으로 총 21건이 지정됨
 - 비조세 부문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지정됨
 - (2023.12.1.) 본회의 자동부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법개정안 15건*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16건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됨
 - * 정부안(원안) 3건, 정부안(수정안) 1건, 의원안 1건⁹⁾, 위원회 대안 10건
 - (2023.12.21.) 본회의 자동부의 세법개정안 15건 중 14건이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835)

[표 5]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 및 지정 결과

연번	법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소관위	지정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993	정성호의원 등 16인	기재위	○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653	김성원의원 등 12인	기재위	○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977	윤영석의원 등 10인	기재위	○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3760	조해진의원 등 10인	기재위	○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044	진선미의원 등 12인	기재위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4114	김진표의원 등 17인	교육위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0	정 부	기재위	○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1	정 부	기재위	○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3	정 부	기재위	○
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4	정 부	기재위	○
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5	정 부	기재위	○
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7	정 부	기재위	○
1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58	정 부	기재위	○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160	정 부	기재위	○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163	정 부	기재위	○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65	정 부	기재위	○
1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4167	정 부	기재위	○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168	정 부	기재위	○
1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70	정 부	기재위	○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171	정 부	기재위	○
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544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재위	×
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835	진선미의원 등 11인	기재위	○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841	진선미의원 등 12인	기재위	×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843	진선미의원 등 13인	기재위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869	진선미의원 등 12인	기재위	×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996	진선미의원 등 13인	기재위	○

연번	법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소관위	지정 여부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025	배준영의원 등 12인	기재위	×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216	진선미의원 등 10인	기재위	×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226	박대출의원 등 11인	기재위	×
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241	진선미의원 등 10인	기재위	×
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252	진선미의원 등 10인	기재위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253	진선미의원 등 10인	기재위	×
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368	민병덕의원 등 14인	정무위	×
3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396	김성주의원 등 55인	정무위	×
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397	김성주의원 등 55인	기재위	×

다. 본회의 심의·의결

- 2023년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14건은 여·야간 예산안 관련 쟁점 합의 후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2.21.)에서 심의·의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4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가결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
- 2023년 지방세 관련 세법개정안 5건은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12.20.)에서 심의·의결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2023.12.19.)를 거쳐 가결

[표 6] 2023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심의 결과

연번	법률안명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상정법안	심의 결과
국세 관련 법률안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안가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연번	법률안명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상정법안	심의 결과
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1.	세입부수 법안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지방세 관련 법률안				
1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0.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2.20.	정부안	수정안가결
17	「지방행정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0.	정부안	원안가결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0.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20.	행안위 대안	원안가결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 본 절에서는 세법별로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
 - 이 외 안전에 대한 상세 개정내역은 II장 참조
- **(소득세법)**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등
 -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자녀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세 이상)에서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현행 첫째/둘째/셋째 각각 15/15/30만원에서 15/20/30만원으로 확대

[표 7]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금액 개정 주요 내용

자녀출생순서	현행(2023년)	개 정
첫째	15만원	15만원
둘째	15만원	20만원
셋째	30만원	30만원

-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2배 확대하였음

[표 8]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비과세 대상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좌동)
비과세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 사유 신설 등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이중 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합리화하였음
 -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현행 제도에 따르면 최초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대상에 포함 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음

- **(부가가치세법)**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¹⁰⁾
 - 영세 개인 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이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의 일정률(9/109)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동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함

[표 9]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업	9/109 (2023.12.31.까지)	9/109 (2026.12.31.까지)
연매출 4억원 초과 음식점업	8/108	8/108

- **(주세법)**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등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종량세 적용)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음

10) 이 외에 소비세와 관련해 정부는 2023년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항목 중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조기 시행 중임

[표 10] 맥주 등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2023년)	개정
대상	종량세 적용 맥주·탁주	(좌동)
조정주기	매년 조정	비정기적 조정
세율구조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시행령으로 규정, 2023.4.1.~2024.3.31. 적용)	기본세율*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세율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 × (1+직전연도 가격변동지수*)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필요시 탄력세율 조정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에게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혼인 혹은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현행 자녀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함
 - 증여일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한함

[표 1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한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2023년)	개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출산시 공제 1억원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됨

[표 12]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시 연부연납 기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2023년)	개정
연부연납 기간	5년	15년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상향, 월세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등
 -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을 현행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지급액을 현행 자녀 1인당 50~80만원을 자녀 1인당 5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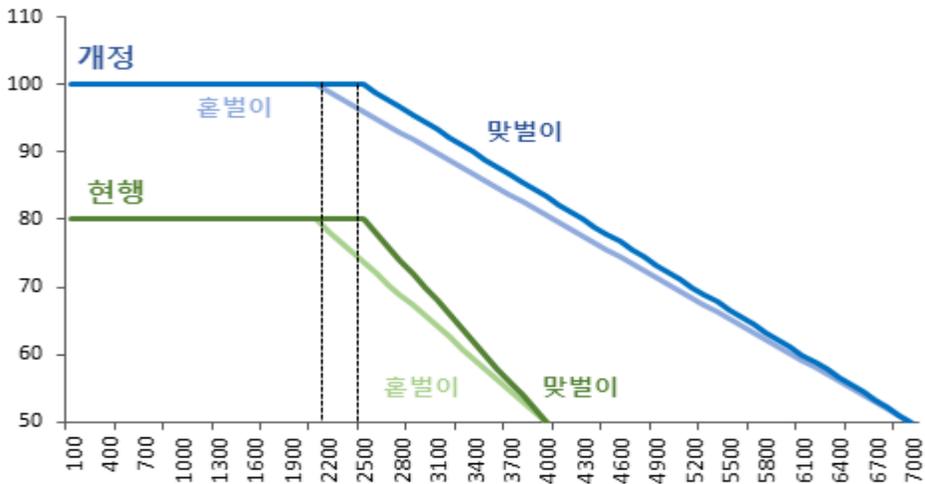
[표 13] 자녀장려세제 신청요건 및 지급액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¹⁾ 4,000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4억원 미만 ²⁾	(좌동)
지급액 ³⁾	자녀 1인당 50~80만원	자녀 1인당 50~100만원

주: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3) 홀별이가구는 소득(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시, 맞벌이가구는 소득 2,500만원 미만 시 최대지급액(현행 80만원, 개정 100만원) 지급

[그림 1] 자녀장려세제 지급 구조 변화: 자녀 1명 기준

(단위: 만원)



주: 가로축은 소득(총급여액 등), 세로축은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나타냄

-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1천만원 상향(근로자는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표 14] 월세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2023년)	개정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한도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까지	연간 월세지출액의 1,000만원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확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등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본공제율을 2~5%p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을 10~15%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견/중소기업 각각 현행 기본공제율 3/7/10%에서 5/10/15%로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을 10/10/15%로 신설하였으며, 추가공제율은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 규정)할 예정

[표 1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2023년)			개정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A)	추가공제 신설 (B)	최대 (A+B)
세액공제율 (%)	대기업	3	없음	대기업	5	10	15
	중견기업	7		중견기업	10	10	20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15	15	30

- 2023년 8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추가¹¹⁾된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법률로 상향
-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는 201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어 폐지된 상태였으나, 이를 2024년부터 재도입하면서 2026년 말로 일몰로 설정

1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우대공제 적용 등

[표 16]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2023년)	개 정(재도입)
감면대상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외국자회사의 광업권·조광권 취득 한정)	(좌동)
공제율	3%	(좌동)
적용기한	2013.12.31. 일몰종료	2024.1.1.~2026.12.31.
중복지원 배제	없 음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 및 폭을 현행 “5년간 100% +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 3년간 50%”로 확대하였으며, 국외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 간 업종요건을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기준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음

[표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2023년)	개 정
세액감면 확대 ¹⁾	소득·법인세액 5년 100% + 2년 50% 감면	소득·법인세액 7년 100% + 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국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 동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주: 1)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의 부분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연장 등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자산세 분야)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10% 저율과세 구간이 현행 10~60억원에서 10~120억원으로 확대됨

[표 18] 기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0~10억원	0	0~10억원	0
	10~60억원	10	10~120억원	10
	60~600억원	20	120~600억원	20

- **(교육세법)**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업·보험업자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추가함
 - 교육세 납세의무자의 대상이 되는 금융업·보험업자는 「교육세법」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데, 금융업·보험업자의 대상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금융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하는 것임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 연장 등
 -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의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1994년 신설된 후,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현재 일몰기한이 2024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다시 2034년 6월까지 10년 연장되었음
- **(지방세 관련 법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회발전특구¹²⁾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등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00만원 한도로 감면함

12)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으로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지역

[표 19]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신설)
감면대상	(신설)	'24년~'25년 자녀 출산 부모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 취득주택)
감면요건	(신설)	(주택가격)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수) 1가구 1주택(일시적 다주택(3월내 1주택)) (거주의무)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 의무
감면내용	(신설)	(감면율) 취득세 100%(*최소납부세제 미적용) (감면한도) 500만원
적용기한	(신설)	2025.12.31.

-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
-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율 및 재산세 감면 기간 조정 가능

[표 20]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행(2023년)	개 정 (신설)
감면대상	(신설)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증설 기업
감면내용	(신설)	① 취득세 50% + 50%(조례),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 + 25%(조례), 재산세 3년 100% + 2년 50% ② 취득세 50% + 50%(조례),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③ 취득세 50% + 25%(조례), 재산세 5년 75% (수도권 5년 35%)
적용기한	(신설)	2026.12.31.

- (기타) 이 외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인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의결

나.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1) 개요

-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정기회 심사대상 안건 중 혼인 증여 재산 공제의 신설, 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동 개정안들은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 외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합의
- 주요 쟁점이 되었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정부가 제안한 혼인 외에 출산도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됨
 - 혼인시 증여재산 공제를 1억원 추가하는 정부안에 더해 출산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증여재산 공제액은 혼인 혹은 출산시 최대 1억원으로 규정
-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기한 연장과 같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안은 정부가 제안한 확대폭을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
 - 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안 기준금액 축소: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안) 120억원
 - ②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안 기간 축소: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안) 15년

[표 21] 심사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법안의 합의 결과

구분	찬성	반대	합의 결과(의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비용에 대한 세부담 완화 - 혼인 지원을 통한 미래의 인구 위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혜대상이 고소득층으로 한정될 가능성, 신혼부부간 격차 확대 우려 - 비혼출산 가정 등이 배제되는 문제 - 정책의 기대효과 불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은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1억원 추가 - 심사과정에서 혼인 외에 출산 요건도 추가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단, 혼인 혹은 출산 시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및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감세로, 부의 대물림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 - 가업승계 세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세법개정(2022년)이 이루어진 지 1년만에 효과성 검증 없이 행해지는 추가적인 완화에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율과세 적용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축소해 120억원 이하로 합의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승계증여세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축소하여 15년으로 수정하여 합의

(2) 주요 안건별 심사¹³⁾ 쟁점

- 본 절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주요 안건에 대해 찬반 대립으로 수정되어 의결된 경우, 찬반 대립이 있었으나 수정 없이 의결된 경우, 찬반 대립으로 의결되지 않은 안건 순으로 정리
 - (찬반 대립으로 수정된 주요 안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찬반 대립이 있었으나 수정 없이 의결된 주요 안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 폐지
 - (찬반대립으로 개정되지 않은 주요 안건) 은행·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안
 - 이 외에 안건에 대한 상세 개정내역은 II장에서 세목별로 별도 정리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증여세)

- 관련 안건
 - 혼인 시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현행 자녀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정부안)

[표 2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정부안	개 정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공제선택) 혼인 시, 자녀 출산 시, 혼인 및 자녀 출산 시 등 공제 선택 가능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부터 2년 이내 - (반환특례) 혼인·출산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출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13)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찬반 쟁점이 있었던 항목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

○ 주요 심사 의견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였으나,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존,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1억원 추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혼인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혼인율 감소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에 대해 동 제도가 혼인율과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의 무상이전을 통한 신혼부부간 자산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표 23]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혼인율 감소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부가적으로 부모세대에서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자녀세대로 부의 무상이전을 통해 소비활성화 및 이에 따른 경제 활력 제고 기대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혼인율과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보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신혼부부간 자산격차 확대가 우려됨 - 혼인 및 출산의 연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기대효과는 불분명 - 혼인에 대해서만 추가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비혼출산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

○ 결론

- 저출산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대상에 혼인 외에 출산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증여세)**

○ 관련 안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함(정부안)
-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확대하도록 함(홍성국·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표 24]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 확대	세율: 10% (단,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 20%)	세율: 10% (단, 과세표준 300억원 초과분 20%)	세율:10% (단,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구 분	현 행	홍성국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기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허가일부터 5년	허가일부터 10년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허가일부터 20년	허가일부터 15년

○ 주요 심사 의견

- 기업승계세제 확대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투자·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부를 대물림 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됨

[표 25]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고령화된 기업 경영자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통해 투자·고용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반대 의견	- 큰 폭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승계세제 관련 세법개정(2022년)이 이루어진 지 1년 만에,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도 없이 행해지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에는 반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에 악용 우려

○ 결론

- 원활한 기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제안된 세제지원 확대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의결
- 기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축소하여 120억원 이하로 조정, 기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안 및 의원안을 수정하여 15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

○ 관련 안건

-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10만원에서 상향하는 안(김희재·송언석·전재수 의원안, 정부안)
-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10만원에서 상향하는 동시에 다자녀에게는 추가한도를 부여하는 안(이수진·서영교 의원안)
-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 금액으로 변경하고 해당 금액을 상향하는 안(김승원·유경준 의원안)
-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비과세 대상을 현행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에서 12세 이하 자녀 보육 및 교육 관련 급여로 확대하는 안(김용민 의원안)
- 비과세 한도 대상을 구분하여 출산 관련 급여는 한도를 폐지하고,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근로자 1인당 한도를 상향하는 안(정성호 의원안)

[표 2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김승원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	김희재 의원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및 12세 이하 자녀 보육·교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구분	송언석 의원안	유경준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2인 이상시 월 3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구분	정성호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대상 분리 및 항목별 한도 조정) - 출산 관련 급여: 전액 (한도 폐지)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확대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2인 이상시 월 4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주요 심사 의견

-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제도의 효과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수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규모의 조세지원보다는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더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표 27]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출산·양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동 제도의 취지에 공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약 20년간 10만원으로 고정됨에 따라, 최근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비과세 확대 필요 - 동 비과세 혜택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출산·양육수당 지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 증대 효과는 없으면서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것에 대한 우려 제기 - 면세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고소득자에게는 한계세율만큼 혜택이 있는 등 역진적이라는 우려 제기 - 이 같은 소폭의 조세지원보다는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 제기

○ 결론

- 비과세 대상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비과세 한도만 현행 근로자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대로 의결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법인세)

◦ 관련 안건

- 공제대상 확대(박대출·이병훈·이용·황보승희·윤두현·변재일 의원안)
- 세액공제율 상향(이상현·배현진·김윤덕·황보승희·이용·이용호·홍성국·운영찬·한병도·이병훈·배준영·윤두현·변재일·박대출 의원안, 정부안)
- 적용기한 연장 또는 일몰 삭제(김윤덕·홍성국·운영찬·한병도·배준영·윤두현·변재일 의원안)

[표 2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이상현 의원안	박대출 의원안	이용 의원안
공제대상	-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 영화, OTT 영상	(현행)	(추가) 음악콘텐츠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공제율(%) (대/중간/중소)	3 / 7 / 10	5 / 10 / 15	5 / 10 / 15	6 / 14 / 20
적용기한	2025. 12. 31.	2025. 12. 31.	2025. 12. 31.	2025. 12. 31.
구분	김윤덕 의원안	배현진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공제대상	(현행)	(현행)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현행)
공제율(%) (대/중간/중소)	9 / 17 / 20	10 / 15 / 20	10 / 15 / 20	15 / 15 / 20
적용기한	2027. 12. 31.	2025. 12. 31.	2025. 12. 31.	항구화
구분	황보승희 의원안	윤두현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운영찬 의원안
공제대상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교양 중 다류 → 교양 전체	(신설) 투자세액공제 10%	(현행)
공제율(%) (대/중간/중소)	10 / 17 / 23	15 / 15 / 25	15 / 20 / 25	20 / 23 / 25
적용기한	2025. 12. 31.	항구화	2025. 12. 31.	항구화
구분	배준영 의원안	홍성국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
공제대상	(현행)	(현행)		교양 중 다류 → 교양 전체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대/중간/중소)	20 / 25 / 25	25 / 25 / 25		20 / 25 / 30
적용기한	2026. 12. 31.	2026. 12. 31.		항구화
구분	정부안		개정	
공제대상	(현행)		(현행)	
공제율(%) (대/중간/중소)	(기본) 5 / 10 / 15 (추가) 10 / 10 / 15		(기본) 5 / 10 / 15 (추가) 10 / 10 / 15	
적용기한	(현행)		(현행)	

○ 주요 심사 의견

- K-콘텐츠를 통한 문화적·경제적 효과가 커짐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원보다는 재정·금융 지원정책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기

[표 2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를 통한 문화적·경제적 효과가 커지고 있으므로, 공제율 확대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함 -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이 낮은 수준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제율 인상이 필요함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은 납부세액이 존재하는 대기업 위주로 수혜가 발생함 - 중·소 제작사의 IP 확보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보다는 재정·금융지원 등 확대가 더 바람직함

○ 결론

- 정부안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2~5%p 인상하고 국내 경제에 높은 전·후방효과가 기대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10~15%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정부안대로 의결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법인세)

○ 관련 안건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양금희 의원안, 정부안)

[표 30]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양금희 의원안	정부안	개정
대상투자	-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 광업권·조광권 관련 외국법인 지분투자 - 외국자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좌동)	(좌동)	(좌동)
공제율(%) (대/중견/중소)	3	3/5/10	3	3
적용기한	2013.12.31. 일몰종료	2024.1.1. ~2025.12.31.	2024.1.1. ~2026.12.31.	2024.1.1. ~2026.12.31.
중복지원 배제	없음	없음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 주요 심사 의견

- 과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기간 중 실질적으로 광업권을 취득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효과성이 불확실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핵심광물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표 3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반도체·이차전지 등 산업적 측면에서 핵심광물의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글로벌 자원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액공제 재도입이 필요함
반대 의견	- 해외자원개발투자 중 실질적으로 광업권을 취득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 제도의 효과성은 낮은 편, 이에 과거 일몰이 종료되었음 - 해외기업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자원 보유국의 정책환경 등을 고려 시 여전히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기대효과가 불투명함

○ 결론

-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제고를 위하여 종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를 재도입 후 2026년까지 운용하는 정부안대로 의결

□ 맥주·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등(주세)

○ 관련 안건

- 맥주·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의 근거 마련(정부안)

[표 32] 맥주·탁주 주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행	정부안	개정
- 맥주·탁주 세율을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 - (서울) 직전연도 12월 31일 세율 × (1+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CPI 증감률의 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 현행 세율: (23.4.1.~24.3.31.)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 (서울)기본세율: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 (탄력세율)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 (서울) 기본세율: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 (탄력세율)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 주요 심사 의견

-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맥주·탁주 주세 물가 연동분의 인상 및 이에 따른 주류 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물가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납세자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잦은 정책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표 33] 맥주·탁주 주세율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맥주·탁주 종량세율에 대하여 물가를 반영해 세율을 자동 조정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물가 급등 시기에 발생 가능한 주류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
반대 의견	- 2020년 물가연동 세율 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조정 방식이 3차례 변경됨에 따라, 잦은 정책 변화가 납세자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 일관성 있는 주세 제도의 운영을 위해 주세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성도 제기

○ 결론

- 맥주·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등 세율 조정 방식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함에 따라, 정부안대로 의결

□ 은행·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안(법인세)

○ 관련 안건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초과소득 과세특례 신설(이성만 의원안)
- 석유정제업자·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용혜인 의원안)
-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법인의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양경숙 의원안)

[표 34] 은행·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이성만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개정
납세 의무자	석유정제업자·LPG 집단공급사업자	석유정제업자·민간은행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법인	미반영
과세대상	직전 3개년도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5억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음)	(당해소득 × 80~90%) - ('15~'19년 평균소득)	직전 3개년도 평균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소득금액	
세율	20%	50%	20%	
적용기한	일몰 없음	2025.12.31.	2025.12.31.	

○ 주요 심사 의견

- 야당을 중심으로 석유정제업·민간 은행 등 특정 산업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정부·여당은 초과이득의 개념이 모호하며, 조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함

[표 35] 은행·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 및 금리 상승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은행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는데, 독점적 지위나 외부요인에 따라 발생한 초과이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 유럽 국가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석유·에너지 기업 등에 대한 추가과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계획 중

구 분	심사 의견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등에서 횡재세 대상이 되는 정유사는 원유 생산업체로 고유가로 인한 이익이 크지만, 우리나라 정유사는 정제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타국과는 차이가 있음 - 정부의 요청으로 은행권 등이 자체적으로 상생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 - 예상치 못한 초과이득에 과세한다면 반대로 예상치 못한 결손은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존재 - 초과이득의 발생이 불의의 이득(횡재)에 의한 것인지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또는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측면이 존재

○ 결론

- 은행·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4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가.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대안 반영된 안건은 총 33건
 - 「조세특례제한법」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 「소득세법」 5건, 「관세법」 4건, 「국세기본법」 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 각 1건

[표 36]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안

법률명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소득세법」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상향 (정점식·고용진·하영제·이달곤·윤준병·신정훈·서삼석·배준영 의원안, 제12조제2호) - 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유동수 의원안, 제25조제2항)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정태호 의원안, 제59조의2) - 자녀세액공제액 상향조정 (강훈식·박광온·고용진·서영교·박성준·진선미·신동근 의원안, 제59조의2)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장 (고용진 의원안, 제164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취득유형 명확화 등 (류성걸 의원안, 제4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12건)	<p>[소득세 분야 6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서삼석·윤영석·진선미 의원안, 제88조의5)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류성걸 의원안, 제91조의22)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 (전재수·고용진·박성준·양금희·유동수·정태호 의원안, 제95조의2) - 기획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99조의4) - 기획발전특구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21조의35) -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정태호·진선미 의원안, 제126조의2)

법률명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p>[법인세 분야 5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상향 입법 (정일영 의원안, 제10조)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양경숙 의원안, 제99조의13) - 기획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21조의33) - 기획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21조의34)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박정 의원안, 제121조의17제1항 제9호·제10호) <p>[소비세 분야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과세특례 항구화 (홍영표 의원안, 제126조의3제1항)
「관세법」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16조의6)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 (김주영 의원안, 제224조)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 (류성걸 의원안, 제264조의11, 제266조의2)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류성걸 의원안, 제327조의2)
「국세기본법」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 무효로 인한 압류 해제를 소멸시효 중단의 예외사유로 규정 (김영선 의원안, 제28조) - 과세정보 요구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강준현·김승원 의원안, 제81조의13)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 (김수홍 의원안, 제81조의15)
「국세징수법」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 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김영선 의원안, 제57조)
「지방세법」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 (조은희 의원안, 제118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확대 (정우택 의원안, 제38조 제4항)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 (강병원 의원안, 제47조의5) -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김교홍·김용판 의원안, 제65조)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정우택 의원안, 제68조, 제177조의2)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최기상 의원안, 제71조제1항) - 기획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자근·박성민 의원안, 제80조의2)

나.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35건의 주요사항이 국회에서 수정
 - 「조세특례제한법」 10건,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각 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징수법」 각 3건, 「소득세법」·「관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¹⁴⁾ 각 2건,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각 1건

[표 37] 국회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법률명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소득세법」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영역 기부금 인정범위에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을 추가하려던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34조)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의 기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에서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양도인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수정(제95조)
「법인세법」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18조의4)
「부가가치세법」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징수 주체 규정 방식을 법률 체계에 맞춰 수정(제60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혼인 외에 출산도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제53조의2) -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15년으로 축소 조정(제71조)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율을 미달지출액의 100%로 변경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200%로 수정(제78조)
「조세 특례제한법」 (10건)	<p>[소득세 분야 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을 3년으로 수정(제18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을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을 3년으로 수정(제18조의2)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더해 월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제91조의19) - 동일인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규제강화 요건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제133조)

1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이나, 본 절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한 것임

법률명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p>[법인세 분야 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를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이연하고자 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104조의1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완화하면서, 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해당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104조의24, 제118조의2) - 해외건설자회사 손금산입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정부안에 대해, 해외자회사 자본잠식 요건은 법률로 명시하도록 수정(제104조의33)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하는 정부안에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제132조, 제144조) <p>[소비세 분야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적용대상 및 환급신청 방법을 확대하는 것 등으로 수정(제105조의3) <p>[자산세 분야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축소하여 120억원 이하로 수정(제30조의6제1항)
「관세법」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그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한 정부안을 5천만원으로 수정(제277조) - 시스템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게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제327조의3)
「국세기본법」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신청자격 대상에 영세법인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영세법인의 요건에 수입금액 외에 자산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제59조의2)
「국세징수법」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신설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체납자가 특별계좌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43조,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 공매재산 취득 자격이 없는 매수자에 대한 매각 절차를 정비하는 정부안에 대해 차순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도 공매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수정(제71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상향 입법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 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제106조)

법률명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대상 범위를 시행령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면허 재취득 제한사유인 국제·지방세 포탈의 최저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제7조)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 탁주·기타 발효주류의 기준금액을 추가 상향(제13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제73조제6항)
「지방세기본법」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려던 정부안을 45만원으로 수정(제55조, 제56조)
「지방세법」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의 개념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개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개념을 바꾸는 대신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제10조의3)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를 “등록당시가액”으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수정(제17조)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 권한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지방교육세 수시부과에 대한 특별징수 권한을 함께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제152조) -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를 변경하며 법 시행 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법 시행 당시 타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부칙 제3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문구를 구체화하도록 수정(제4조)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주택 취득가액 요건을 추가하도록 수정(제36조의5) -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추정요건을 변경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고, 반환공여구역 내 창업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제75조의4, 부칙 제12조) - 특별재난지역 유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제92조)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이하 누적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¹⁵⁾

[표 38]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누적
누적법	-10,762	-10,064	-9,377	-9,214	-9,170	-48,587
소득세	-9,282	-8,369	-7,179	-6,578	-6,074	-37,482
법인세	-503	-9	-79	-162	-254	-1,008
부가가치세	-656	-1,097	-1,326	-1,445	-1,578	-6,102
기타	-320	-589	-794	-1,029	-1,264	-3,995
순액법	-10,762	698	687	163	1,221 ¹⁾	-7,994
소득세	-9,282	913	1,191	600	505	-6,074
법인세	-503	494	-70	-83	-92	-254
부가가치세	-656	-440	-229	-119	-133	-1,578
기 타	-320	-268	-205	-235	941 ¹⁾	-88

주: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5년)'는 2028~2039년 기간에 대한 세수 변화분을 포함

1.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이며, 순액법은 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단순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 세수효과는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결과임

- 개정세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소득세 -2조 6,971억원), 자녀세액공제 대상·지급액 확대(소득세 -3,885억원),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법인세 -5,293억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법인세 +5,285억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 -4,012억원) 등

15)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이며,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3년) 대비 증가한 누적세수를 세수효과로 선정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기본으로 사용함

[표 39]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개정세법 주요 항목	2024~2028 연평균	2024~2028 누적합계
(소득세)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5,394	-26,971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지급액 확대	-777	-3,885
(법인세)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1,059	-5,293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1,057	5,285
(부가가치세)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02	-4,012

□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국회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대비 5년(2024~2028년) 누적 6,412억원 감소

□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 내역

- 소득세(5년간 -6,923억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손자녀) 및 둘째자녀 공제액 인상(15→20만원): -3,885억원
 -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및 공제한도 상향(750만원→1천만원): -2,221억원
 - *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원→7천만원
 -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 -648억원
 -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3천만원*→5천만원): -131억원
 -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한 한도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상향(월 40만원→55만원, 2025년~): -38억원
- 부가가치세(5년간 -1억원)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1억원
- 기타(5년간 +512억원)
 - 증여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조정(20년→15년): +512억원

[표 40] 2023년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소득세	-454	-1,714	-1,571	-1,579	-1,605	-6,923
-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액 인상	-454	-1,009	-801	-807	-814	-3,885
-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공제 한도 상향	-	-456	-516	-585	-664	-2,221
-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	-	-216	-216	-139	-77	-648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33	-33	-33	-32	-1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	-5	-15	-18	-38
부가가치세	-	-0.1	-0.2	-0.2	-0.2	-1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0.1	-0.2	-0.2	-0.2	-1
기타	35	69	102	136	170	512
- 증여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조정	35	69	102	136	170	512
합 계	-419	-1,645	-1,470	-1,444	-1,435	-6,412

주: 1.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고 2024~2028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

6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 2023년 세법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제도 상존
 - 각 논의 과제별 상세내용은 IV장 참조
- **(출산·양육 지원 수단으로서 조세지원제도의 적절성 관련)** 출산·양육 지원 수단으로서 조세지원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출산·양육 관련 각종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자녀 출생·양육과 관련한 각종 재정지출·조세지출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주세 세율 조정 및 종량세 전환 등 과세체계 개편 관련)** 맥주·탁주 주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및 증가세 주류의 종량세 전환 등 주세 과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산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율 적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전면적인 종량세 방식의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산 주류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가 국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개정·시행된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준수 관련)** 다수의 비과세·감면 확대 및 일몰연장 법안으로 국세감면율의 추가적인 상승 우려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기
- **(양도소득세 법 조문 체계 정비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의 복잡성 및 난해함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작업 중인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방안을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을 포함한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전면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 사항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가. 총괄

- 소득세 분야는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장려세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음
 -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가액 기준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였으며, 2024년 소비증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를 신설하였음
-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하기로 함
 -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였으며, 자녀세액공제대상 자녀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였음
 - 자녀장려금의 수급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을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최대 지급금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자녀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세 이상)에서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적용하던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 20만원으로 인상함
-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별 공제한도를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확대함

-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2년 공제율을 인상¹⁶⁾한 데 이어 금년에는 소득기준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함
 -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공제대상 월세지출액의 한도도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한편,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1~2022년에 시행된 소비증가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재도입하기로 함
 -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를 적용하기로 함
- 그 외 노후소득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양식어업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 2022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한 데 이어 금년에는 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한편,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 인정하여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시행령에서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현행 어로어업 5천만원)하기로 함
 - 현행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시행령상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합계액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있음
- 참고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상향(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2023.12.26.)에서 의결됨
 -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하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보유기준을 5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16)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5%(17%)로 인상하였음. 따라서 총급여 5천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함

나. 주요 논의사항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근로자(종교인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였음
- 개정 취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2년 기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에 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중의 하나로 동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였음
- 시행일: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03년 최초 도입된 이후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유지되어 있음
- 동 개정은 2004년부터 시행

□ 세수효과

- (2024년) -471억원 (연평균) -450억원 (2024~2028년) -2,249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할 때 출산·양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및 정부 모두 공감하였으나, 동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및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표출됨
- 동 개정안에 대해 출산·양육지원 정책으로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고, 조세지원보다는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
- 논의과정에서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확대는 출산율 증대 효과는 없으면서 세수감소만 초래하기 때문에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면세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고소득자에게는 한계세율만큼 혜택이 있는 등 역진적기에 소폭의 조세지원보다는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다만, 2003년 개정으로 동 제도가 신설되면서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약 20년간 10만원으로 고정되어있던 점,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에 대한 지원 필요성,

비과세 혜택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출산·양육수당 지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안으로 의결됨

[표 4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김승원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	김희재 의원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출산 관련 급여 및 12세 이하 자녀 보육 및 교육 관련 급여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구분	송언석 의원안	유경준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전재수 의원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2인 이상시 월 3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구분	정성호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정부안	개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대상 분리 및 항목별 한도 조정) - 출산 관련 급여: 전액(한도 폐지) - 6세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대상) - 현행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2인 이상시 월 4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을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수준을 강화
- 개정 취지: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제도 도입
 - 대상: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 가구 및 사업소득 가구
 - 총소득 기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4,000만원 미만
 -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
 - 재산요건: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미만
 - 자녀 1명당 최대지급액 50만원
- 2016년 주택요건 폐지
- 2017년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한부모 외국인 및 종교인 소득(1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에 대해서도 자녀장려세제 적용, 재산요건 완화
 - 재산요건: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2018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신청 허용 및 지급액 상향조정(50만원 → 70만원)
- 2022년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상향조정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70만원 → 80만원

□ 세수효과

- (2024년) -6,826억원 (연평균) -5,394억원 (2024~2028년) -26,971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저출산 문제 및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대상자 확대와 지급금액 인상 중 대상자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소득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자녀장려세제 확대안이 금년 정부의 세법개정안 가운데 세수감소 규모가 가장 큰 법안인 만큼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도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에 여·야 모두 공감하며 정부안이 채택됨 - 동 제도의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저출산 문제가 국가 경제와 미래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증세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42] 자녀장려금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한병도 의원안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소득 요건	4,000만원 미만	8,0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자녀 1명당 50~80만원	자녀 1명당 150~200만원
구 분	정부안	개 정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소득 요건	7,0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자녀 1명당 50~100만원	자녀 1명당 50~100만원

(3)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액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하고,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씩 적용하던 세액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 (현행)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시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 초과 시 35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 취지: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행일: 공제액 인상은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자녀세액공제 도입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20세 이하)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
- 2015년 6세 이하 추가공제 및 출산·입양자 공제 신설
 -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확대된 제도를 2014년 귀속소득분에 소급하여 적용
 -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 확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 (6세 이하 추가공제)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5만원 공제, (출산·입양자 공제) 1명당 30만원 공제
- 2016년 출산·입양자 공제를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차등 적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 2017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용 배제 조치)
- 2018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산·입양자 공제는 유지
- 2022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산·입양자 공제는 유지

□ 세수효과

- (2024년) -454억원 (연평균) -777억원 (2024~2028년) -3,885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하여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내년 예산안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의 예산이 전년도 보다 확대되어 반영되어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의원안 대부분이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현행 둘째까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모두 인상하여 세수감소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녀장려세제 확대안 등 다른 조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현재 제도는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보고 세 자녀 가구부터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두 자녀 가구부터 혜택을 확대하거나,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명의 자녀라도 있는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여·야 모두 제도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제도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만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증액하는 데 합의
- 한편,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합의

[표 43] 자녀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강훈식 의원안	박광은 의원안	
기본공제	(대상자) -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8세 이상의 자녀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2명 초과: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0만원 - 2명 40만원 - 2명 초과: 40만원 + 초과 1명당 4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당 50만원	
출산입양 공제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부터 70만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 셋째부터 200만원	- 첫째 50만원 - 둘째 70만원 - 셋째부터 100만원	
구분	고용진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박성준 의원안	
기본공제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30만원 - 1명 초과: 30만원 + 초과 1명당 5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5만원 - 2명 50만원 - 2명 초과: 50만원 + 초과 1명당 5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30만원 - 2명 60만원 - 2명 초과: 60만원 + 초과 1명당 60만원	
출산입양 공제	-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부터 150만원	- 첫째 6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부터 140만원	- 첫째 50만원 - 둘째 80만원 - 셋째부터 120만원	
구분	진선미 의원안	신동근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0만원 - 2명 40만원 - 2명 초과: 40만원 + 초과 1명당 40만원	(대상자) - 현행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25만원 - 2명 75만원 - 2명 초과: 75만원 + 초과 1명당 100만원	(대상자) -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자녀 수별 공제액) - 현행	(대상자) -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자녀 수별 공제액)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2명 초과: 35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공제	(현행)	(현행)	(현행)	(현행)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공제대상 주택가액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
 - 주택(분양권 포함) 기준시가 상향(5억원 → 6억원) 및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별 공제한도 상향(300~1,800만원 → 600~2,000만원)
- 개정 취지: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시행일: (기준시가 상향, 공제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차입분
(성과조치) 2012년 전 차입분은 개정한도와 종전 한도 중 유리한 한도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으로 2000년 11월 도입 및 시행함
 - 최초 공제한도액(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공제액과의 합계)은 연 600만원으로 규정
 - 2001년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하향했다가 2003년에는 1,000만원까지 상향
- 2005년에는 적용대상을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 세대주로 축소하고 주택(분양권) 기준가액(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및 면적기준(국민주택규모 85㎡ 이하) 규정을 새롭게 마련
- 2011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차입상품 유형별로 차등화
 - (2012.1.1.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30년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2012.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 2013년 주택(분양권 포함) 기준가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2014.1.1.~2018.12.31. 차입분)하고 면적 기준을 폐지했음
- 2014년에는 상환기간·방식에 따른 유형을 세분화하고 공제한도 차등화 및 상향(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 연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 2018년 주택 기준가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분양권 동일)
 - 2019년 분양권 기준가액 역시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 2020년에는 공제대상 세대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한 외국국적동포여야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이 주거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적용함

□ 세수효과

- (2025년*) -150억원 (연평균) -186억원 (2025~2028년) -744억원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경감의 측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기준금액 인상 및 공제한도 상승이 필요한 취지를 설명함
- 논의과정에서 해당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받는 자의 비중이 작고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 주택가격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마련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안대로 의결됨

[표 44]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박성준 의원안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분양권 포함)	9억원 이하(분양권 포함)													
공제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환기간</th> <th>상환방식</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5년 이상</td> <td>고정금리+ 비거치식</td> <td>1,800만원</td> </tr> <tr> <td>고정금리 비거치식</td> <td rowspan="2">1,500만원</td> </tr> <tr> <td>기타</td> </tr> <tr> <td rowspan="2">10년 ~15년</td> <td>고정금리</td> <td rowspan="2">300만원</td> </tr> <tr> <td>비거치식</td> </tr> </tbody> </table>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1,800만원	고정금리 비거치식	1,500만원	기타	10년 ~15년	고정금리	300만원	비거치식	(현행)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1,800만원													
	고정금리 비거치식	1,500만원													
	기타														
10년 ~15년	고정금리	300만원													
	비거치식														
부칙		2018.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구분	정부안	개정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분양권 포함)	6억원 이하(분양권 포함)																												
공제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환기간</th> <th>상환방식</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5년 이상</td> <td>고정금리+ 비거치식</td> <td>2,000만원</td> </tr> <tr> <td>고정금리 비거치식</td> <td>1,800만원</td> </tr> <tr> <td>기타</td> <td>800만원</td> </tr> <tr> <td rowspan="2">10년 ~15년</td> <td>고정금리</td> <td rowspan="2">600만원</td> </tr> <tr> <td>비거치식</td> </tr> </tbody> </table>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 비거치식	1,800만원	기타	800만원	10년 ~15년	고정금리	600만원	비거치식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환기간</th> <th>상환방식</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5년 이상</td> <td>고정금리+ 비거치식</td> <td>2,000만원</td> </tr> <tr> <td>고정금리 비거치식</td> <td>1,800만원</td> </tr> <tr> <td>기타</td> <td>800만원</td> </tr> <tr> <td rowspan="2">10년 ~15년</td> <td>고정금리</td> <td rowspan="2">600만원</td> </tr> <tr> <td>비거치식</td> </tr> </tbody> </table>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 비거치식	1,800만원	기타	800만원	10년 ~15년	고정금리	600만원	비거치식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 비거치식	1,800만원																												
	기타	800만원																												
10년 ~15년	고정금리	600만원																												
	비거치식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 비거치식	1,800만원																												
	기타	800만원																												
10년 ~15년	고정금리	600만원																												
	비거치식																													
부칙	2012년 이전 차입분은 개정한도와 종전한도 중 유리한 한도 적용	2012년 이전 차입분은 개정한도와 종전한도 중 유리한 한도 적용																												

(5)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기준 상향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기준 상향(연 1,200만원 → 1,500만원)
 - 사적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3~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함
- 개정 취지: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12년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함
 - 기존에는 총연금액(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합산)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음
- 2022년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및 기타소득으로서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기준 상향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기존 연금 소득 과세자료의 미비로 추정이 어려움

□ 주요 논의사항

- 저율·분리과세 기준 상향으로 인한 수혜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이라는 우려 및 노령빈곤 정책으로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보다 기초연금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므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저율·분리과세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안대로 의결됨

[표 45]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기준 상향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김희곤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기준금액	연 1,200만원	연 2,400만원	연 1,400만원
구분	이인선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
기준금액	연 2,400만원	연 1,400만원, 기준 초과 시 누진세율 적용 (1,400~2,400만원 10%, 2,400만원 초과 15%)	연 2,000만원
구분	정부안	개정	
기준금액	연 1,500만원	연 1,500만원	

(6)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어업소득 중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주업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
 - (현행) 어업소득 중 어로어업소득은 주업이지만 양식어업소득은 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개정)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주업소득인 어로어업소득과 동일하게 소득금액 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 취지: 어업 분야의 악화된 경영 여건 및 농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현재 어업은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으로 구분되며, 어로어업은 2019년 세법개정으로 주업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음
 - 당시 국회심의과정에서 비과세 기준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수산물 종류에 따라 소득률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을 감안하여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¹⁷⁾

□ 세수효과

- (2025년*) -33억원 (연평균) -33억원 (2025~2028년) -131억원
 -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 양식업의 실질적 업태, 경영여건상 어려움 및 농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비과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됨
- 논의과정에서 비과세 한도 기준을 농업에서 적용하는 기준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 어종별 비용을 차감한 소득률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세원칙상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소득금액으로 합의
- 또한 주업소득의 인정 범위와 형태를 법률과 시행령 중 어느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주요 농어업별 소득의 비과세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 또한 법체계상 일관성 측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시행령 사항으로 합의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가의 주업 및 부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해당 조문에 양식어업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17) 참고로 농업소득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

[표 46]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정점식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어업 관련 주업 범위	어로어업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5천만원	각 5천만원	(수입금액) 10억원	
	양식어업	3천만원			
비과세 한도 규정형식	어로어업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양식어업		법률		
구분	하영제 의원안		이달곤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어업 관련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10억원	5천만원	각 7천만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규정형식	어로어업	법률	시행령	법률	
	양식어업		법률		
구분	신정훈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	개 정
어업 관련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단 원양어업 배제)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각 1억원	전액(한도 없음)	5천만원	5천만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규정형식	어로어업	법률		시행령	
	양식어업				

[표 47] 소득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결혼·출산양육 지원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마목)	(비과세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 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 - (현행) - (신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 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	(비과세 한도) -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한도) -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 여로서 월 20만원 이내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59조제2)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세 이상) (공제금액)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30만원 + 초과 1 명당 30만원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8세 이상) (공제금액)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 초과: 35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제4제2항)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 대상) -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 애인, 중증질환자 등, 난임시 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 대상) - (현행) - (신설) 6세 이하 부양가족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상향 등 (소득세법 제100조제29)	(소득요건 및 지급액)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총급여액등</th> <th>자녀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출 별 이</td> <td>~2,100만원</td> <td>1인당 80만원</td> </tr> <tr> <td>2,100~ 4,000만원</td> <td>8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 1,900분의30</td> </tr> <tr> <td rowspan="2">맞 별 이</td> <td>~2,500만원</td> <td>1인당 80만원</td> </tr> <tr> <td>2,500~ 4,000만원</td> <td>8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1,500분의30</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출 별 이	~2,100만원	1인당 80만원	2,100~ 4,000만원	8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 1,900분의30	맞 별 이	~2,500만원	1인당 80만원	2,500~ 4,000만원	8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1,500분의30	(소득요건 및 지급액)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총급여액등</th> <th>자녀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출 별 이</td> <td>~2,100만원</td> <td>1인당 100만원</td> </tr> <tr> <td>2,100~ 7,000만원</td> <td>10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 4,900분의50</td> </tr> <tr> <td rowspan="2">맞 별 이</td> <td>~2,500만원</td> <td>1인당 100만원</td> </tr> <tr> <td>2,500~ 7,000만원</td> <td>10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4,500분의50</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출 별 이	~2,100만원	1인당 100만원	2,100~ 7,000만원	10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 4,900분의50	맞 별 이	~2,500만원	1인당 100만원	2,500~ 7,000만원	10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4,500분의50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출 별 이	~2,100만원	1인당 80만원																										
	2,100~ 4,000만원	8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 1,900분의30																										
맞 별 이	~2,500만원	1인당 80만원																										
	2,500~ 4,000만원	8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1,500분의30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출 별 이	~2,100만원	1인당 100만원																										
	2,100~ 7,000만원	10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 4,900분의50																										
맞 별 이	~2,500만원	1인당 100만원																										
	2,500~ 7,000만원	10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4,500분의50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서민중산층, 소상공인 지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의 소형주택 특례 일몰 연장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가액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6항)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환기간</th> <th>상환방식</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5년 이상</td> <td>고정금리+비거치식</td> <td>1,800만원</td> </tr> <tr> <td>고정금리비거치식</td> <td>1,500만원</td> </tr> <tr> <td>기타</td> <td>500만원</td> </tr> <tr> <td rowspan="2">10년~15년</td> <td>고정금리</td> <td rowspan="2">300만원</td> </tr> <tr> <td>비거치식</td> </tr> </tbody> </table>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고정금리비거치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15년	고정금리	300만원	비거치식	(공제대상)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 공제한도: 600만원~2,00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환기간</th> <th>상환방식</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5년 이상</td> <td>고정금리+비거치식</td> <td>2,000만원</td> </tr> <tr> <td>고정금리비거치식</td> <td>1,800만원</td> </tr> <tr> <td>기타</td> <td>800만원</td> </tr> <tr> <td rowspan="2">10년~15년</td> <td>고정금리</td> <td rowspan="2">600만원</td> </tr> <tr> <td>비거치식</td> </tr> </tbody> </table>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기타	800만원	10년~15년	고정금리	600만원	비거치식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고정금리비거치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15년	고정금리	300만원																												
	비거치식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2,000만원																												
	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기타	800만원																												
10년~15년	고정금리	600만원																												
	비거치식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8항)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 2024.1.1.~2024.12.31. 한시적용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추가 (소득세법 제86조)	(신설)	(소액부징수 예외) -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제외 * (시행령 개정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제30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 상향 (조특법 제87조제2항·제5항)	(공제대상 납입한도) - 240만원 (공제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 합계액의 500만원까지	(공제대상 납입한도) - 300만원 (공제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 합계액의 800만원까지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제95조의2)	(소득기준)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 까지	(소득기준)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간 월세지출액의 1,000만원 까지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조특법 제96조의3)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4.12.31.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조특법 제99조의10)	(적용기한) - 2022.12.31. 이전 폐업하고 2025.12.31.까지 사업 개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신청기한) - 2020.1.1.~2026.12.31. (강제징수 기준일) - (신설)	(적용기한) - 2023.12.31. 이전 폐업하고 2026.12.31.까지 사업 개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신청기한) - 2020.1.1.~2027.12.31. (강제징수 기준일) - 2023.1.1.~12.31. 폐업할 시: 2023.7.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제100조의7)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 장려금 산정액의 90%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 장려금 산정액의 95%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22조의3제1항)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까지 (적용기한) 2023.12.31.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간 월세지출액의 1,000만원까지 (적용기한) 2026.12.31.
전통시장·문화비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제126조의2)	(공제율)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문화비): 30% - 전통시장: 40%	(공제율)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문화비): 40%* - 전통시장: 50%* * 2023.4.1.~12.31. 사용분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조특법 제126조의2)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례)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적용
청년자산형성·노후대비		
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9호다목)	(저율·분리과세 기준) - 연 1,200만원	(저율·분리과세 기준) - 연 1,500만원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청약 저축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조특법 제87조제3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5.12.3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등 (조특법 제91조의19)	(적립한도) - 월 40만원 (적용기한) - 가입일 기준 2023.12.31.	(적립한도) - 월 55만원(2025년부터) (적용기한) - 가입일 기준 2026.12.3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91조의20)	(적용기한) 2023.12.31. (중도해자인출 시 불이익) -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배제 - 총 납입액의 6% 추징	(적용기한) 2024.12.31. (중도해자인출 시 불이익) - 전환가입을 위해 해지하는 경 우 해지 전 펀드 납입금액 소 득공제 허용 - 전환가입 시 추징 제외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조특법 제91조의22)	(신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일시 납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만기일 이후 해지, 청년희망적금 해지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금 60% 이상 납입
투자 활성화		
공모부동산펀드 및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연장 등 (조특법 제87조의7)	(적용기한) - 투자일 기준 2023.12.31. (추징) -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 ·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 투자일 기준 2026.12.31. (추징) - (현행) - 단,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제121조의35)	(신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임주기업 등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투자금액 3억원 한도)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과세체계 정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가산율) - 11% (종전 법인세 최저세율 10%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배당가산율) - 10% ('23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 9%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의 정의) -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택의 정의) -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 (조특법 제91조의24)	(신설)	(가입요건) - 직전연도 소득 미확정기간(1~7월)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허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개략적 계산과정 서술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제93조)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단순나열식 서술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을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등 단계별로 서술하고 조문구조 단순화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조정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 건축물: 보유기간별 공제율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단서 신설) 비주택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1세대1주택은 다음의 공제율 합산하여 적용 - (보유기간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 공제율+주택 보유기간 공제율(공제율 합계 최대 40%) - (거주기간별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 - 202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 항목 합리화 (소득세법 제97조의2)	(필요경비 포함항목) - 거주자가 해당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	(필요경비 포함항목) - 거주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기타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사목)	(비과세 대상 및 한도) -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 - 양식어업을 포함한 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	(비과세 대상 및 한도) - 양식어업을 농어가부업 소득에서 분리(주업소득 인정),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 (시행령 규정 사항)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이하(시행령) (적용대상) - 종업원 등	(비과세 한도) - 연 700만원 이하(시행령) (적용대상) - (단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적용 제외
12억 초과 2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등을 간주임대료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현행) - (신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등이 시행령의 금액 초과하는 경우 (2026.1.1. 시행)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세법 제81조의11)	(시행시기) - 2024.1.1.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2024.1.1.~2024.12.31.	(시행시기) - 2026.1.1.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2026.1.1.~2026.12.31. (단, 소규모사업자는 2026.1.1.~2027.12.31.)
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 신설 (소득세법 제156조의9)	(신설)	-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인(외국인 증권·운용사)에 대해 원천징수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 거래 일괄 주문·결제를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유예 (소득세법 제164조의3)	(시행시기) - 2024.1.1.	(시행시기) - 2026.1.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p>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8조)</p>	<p>(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등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② 국외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③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④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p> <p>(적용기한) - 2023.12.31</p>	<p>(대상) - (현행) - (추가)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p> <p>(적용기한) - 2026.12.31</p>
<p>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8조의2)</p>	<p>(특례내용) -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과세 선택 허용(단,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p> <p>(적용기한) -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하기 시작하는 경우</p>	<p>(특례내용) - (현행) - 미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사택 제공 이익 등) 제외</p> <p>(적용기한) -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하기 시작하는 경우</p>
<p>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46조의8)</p>	<p>(적용기한) - 2023.12.31.</p>	<p>(적용기한) - 2026.12.31.</p>
<p>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9조제1항)</p>	<p>(적용기한) - 2023.12.31.</p>	<p>(적용기한) - 2026.12.31.</p>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조특법 제70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신설)	<p>(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p>(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후 재양도시 세액의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농지등에 대한 취득 시기는 그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정함 <p>(임차기간 내 환매권 미행사 후 사망한 경우의 환급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제77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7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조의7)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조의9)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조특법 제88조의5)	(비과세 한도) -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비과세 한도) -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기회발전특구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	(신설)	(요건을 충족하는 기회발전특구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동 농어촌주택 대상에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추가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유예 (조특법 제104조의5)	(적용기한) - 2024.1.1.~2025.12.31.	(적용기한) - 2026.1.1.~2027.12.31.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세액공제 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3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동일인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제 강화 (조특법 제133조제2항)	(신설)	(감면 종합한도) - 2년 이내 동일인(또는 배우자)에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분할한 경우)하여 토지의 일부 또는 지분을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4, 제156조의6)	(경정청구 기한) - 원천징수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기한) - 원천징수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과세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지분율</th> <th>보유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 <td>1%</td> <td rowspan="3">10억원</td> </tr> <tr> <td>코스닥</td> <td>2%</td> </tr> <tr> <td>코넥스</td> <td>4%</td> </tr> </tbody> </table>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과세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지분율</th> <th>보유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 <td>(현행)</td> <td rowspan="3">50억원</td> </tr> <tr> <td>코스닥</td> <td>(현행)</td> </tr> <tr> <td>코넥스</td> <td>(현행)</td> </tr> </tbody> </table>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현행)	50억원	코스닥	(현행)	코넥스	(현행)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현행)	50억원																				
코스닥	(현행)																					
코넥스	(현행)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가. 총괄

- 법인세 분야는 투자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연장하고, 상생협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영상콘텐츠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회수 곤란한 해외건설자회사 채권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해외자원·건설투자를 지원
 - 종전 지역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이견 없이 연장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고,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산입 대상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기업의 투자지원 확대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율 신설
 - 기본공제율 종전 3~10%에서 5~15%로 상향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높은 영상콘텐츠 등은 10~15%의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3%)를 신설
 -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여 2026년까지 운용하도록 개정
 - 회수불능 해외건설자회사의 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10년간 10%)을 통해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손금산입 대상 채권은 자본잠식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된 해외건설자회사로부터 5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이자, 용역대가 등
 - 이외에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세제지원에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과세특례도 연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세제지원 확대
 - 종전 지역특구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로 일괄 연장함
 - (대상지역) 연구개발특구, 위기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이전기업: 종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 (평화경제특별구역) 창업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사업시행자: 3년간 50%, 2년간 25% 세액감면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손금산입 한도 10% 추가적용 신설
- 이외에도 과세체계 정비 및 세무행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 2022년 개정(연결납세법인 요건(100→90%) 확대)의 후속조치로 연결납세 방식의 조기포기 제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하고, 연결법인간 세액배분 방식을 조정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소급지급자의 원천징수 특례 신설 등

나. 주요 논의사항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2~5%p 확대 및 추가공제율(10~15%)신설
 - 기본공제율 상향(대/중견/중소, %): (현행) 3 / 7 / 10 → (개정) 5 / 10 / 15
 - 추가공제율* 신설(대/중견/중소, %): 10/10/15
 - * 국내 제작비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에 적용
 - 개정 취지: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최근 개정 연혁

-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부터 도입되어, 공제대상과 제작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2020년) 공제대상에 '오락프로그램' 추가
 - (2022년) 국외에서 발생한 제작비도 공제대상에 포함
 - (2023년) 공제대상 콘텐츠를 'OTT * 영상물'까지 확대
- * 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세수효과

- (2025년*) -202억원 (연평균) -206억원 (2025~2026년) -412억원
 - *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 해당 세수효과는 기본공제율 상향에 따른 효과만 반영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추가공제율 신설에 따른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이루어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은 크게 '공제대상', '세액공제율', '적용기한'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공제대상) 영상물로 한정된 현행 공제대상 콘텐츠 분야를 음악, 게임 등까지 확대하는 의원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으나, 정부는 타 분야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세액공제율)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정부는 국내경제에 전·후방 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제작비 비중이 높은 영상물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적용기한) 기획부터 제작·상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영상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적용기한 연장 또는 일몰 삭제(항구화)를 통하여 투자·제작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함
-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을 신설하는 정부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짐
 - 기본공제율을 2~5%p 상향하고 국내 제작비 비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상물에 대해 추가공제율(10~15%)을 적용
 - 추가공제율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2023년 12월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마련할 예정임

[표 48]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이상헌 의원안	박대출 의원안	이용 의원안
공제대상	- 방송프로그램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 영화, OTT 영상	(현행)	(추가) 음악콘텐츠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공제율(%) (대/중간/중소)	3 / 7 / 10	5 / 10 / 15	5 / 10 / 15	6 / 14 / 20
적용기한	2025.12.31.	2025.12.31.	2025.12.31.	2025.12.31.
구분	김윤덕 의원안	배현진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공제대상	(현행)	(현행)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현행)
공제율(%) (대/중간/중소)	9 / 17 / 20	10 / 15 / 20	10 / 15 / 20	15 / 15 / 20
적용기한	2027.12.31.	2025.12.31.	2025.12.31.	항구화
구분	황보승희 의원안	윤두현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윤영찬 의원안
공제대상	(추가) 뮤직비디오, 게임, 전자책, 웹툰 등	교양 중 다규 → 교양 전체	(신설) 투자세액공제 10%	(현행)
공제율(%) (대/중간/중소)	10 / 17 / 23	15 / 15 / 25	15 / 20 / 25	20 / 23 / 25
적용기한	2025.12.31.	항구화	2025.12.31.	항구화
구분	배준영 의원안	홍성국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	
공제대상	(현행)	(현행)	교양 중 다규 → 교양 전체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대/중간/중소)	20 / 25 / 25	25 / 25 / 25	20 / 25 / 30	
적용기한	2026.12.31.	2026.12.31.	항구화	
구분	정부안		개정	
공제대상	(현행)		(현행)	
공제율(%) (대/중간/중소)	(기본) 5 / 10 / 15 (추가) 10 / 10 / 15		(기본) 5 / 10 / 15 (추가) 10 / 10 / 15	
적용기한	(현행)		(현행)	

(2)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상향 입법
 - 정부는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에 추가하였으나,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 취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은 2022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2023년 수차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7개 분야까지 확대
 - 2023년 4월부터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상향입법하여 법률로서 규정하였으나, 동년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표 49]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연혁

	분 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
2022.2.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3개 분야)	시행령 별표7의2
2023.2.	+ 디스플레이(4개 분야)	시행령 별표7의2
2023.4.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6개 분야)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상향 입법)
2023.8.	+ 바이오의약품(7개 분야)	시행령 별표7의2

□ 세수효과

- (2024년) -536억원* (연평균) -1,059억원 (2024~2028년) -5,293억원
 - * 시행령 부칙에 의해 2023년 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2024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다수의 의원안과 함께 금년 8월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함

- 여·야 모두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포함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추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할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취지에 맞춰 향후 분야의 세부적인 기술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더라도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추후 불가피하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추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심사 결과,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개정됨
- 또한, 여·야 및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추가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함
 -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의 추가적인 확대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의 기술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취지에 맞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 및 정부 모두 동의
-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여 개선방향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3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현행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기술 분야의 범위가 다른 문제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표 50]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일영 의원안	구자근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유익동 의원안	개정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추가	(법률 명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시행령) - 바이오 의약품	(분야 추가) - 바이오 의약품	(분야 추가) - 로봇, 원자력	(분야 확대) -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 인공지능	(법률로 상향) - 바이오의약품

(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 2013년 종료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재도입하여 2026년까지 운용
- 개정 취지: 세제지원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자원안보를 강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출자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 (2025년) -27억원* (연평균) -15억원 (2025~2028년) -61억원
 - *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2013년 일몰종료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재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1개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함
 - 양금희 의원안은 정부안과 비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시 감면 대상은 동일하지만, 공제율, 적용기한 및 중복지원 배제 여부 등에서 정부안과 차이
- 주로 동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정부 및 여당은 최근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측면에서의 원료광물 자원 수요 증가로 해외자원의 개발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정부안에 동의함
 - 반면, 야당은 과거 동 제도의 적용에도 해외자원개발시 조광권 및 광업권의 취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원개발에 대한 해외투자 유입 제한 등 자원보유국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 ※ 이에 정부는 과거 부실투자 등 문제점이 공기업 주도적인 자원개발행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은 배제하는 내용 포함
-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재도입하되, 국가지원 부문에 대해 세제지원을 배제하는 정부안대로 개정됨

[표 5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양금희 의원안
감면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투자·출자시 세액공제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외국자회사의 광업권·조광권 취득 한정)	(현행)
공제율	3%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적용기한	2013.12.31. 일몰	2024.12.31.~2025.12.31.
중복지원 배제	-	-
구분	정부안	개정
감면내용	(현행)	(현행)
공제율	3%	3%
적용기한	2024.12.31.~2026.12.31.	2024.12.31.~2026.12.31.
중복지원 배제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국가 등의 보조금 등 지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배제

(4)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5년 100%+2년 50%) 도입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수도권 종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

○ 개정 취지: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이전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2023년 12월 기준, 기회발전특구* 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함

*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으로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지역

□ 주요 논의사항

-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제출되었으며,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함
- 심사과정에서 현행 존재하는 타 지역특구 및 비수도권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등으로 세제지원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과세특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전기업까지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경우 수도권 기업이 아닌 다른 지역특구 내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논의 결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 다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종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

[표 5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구자근 의원안	이장섭 의원안	홍성국 의원안
감면대상	(신설)	공장·본사 이전기업	공장·본사 이전기업	입주기업
감면율	(신설)	10년 100% + 10년 50%	10년 100% + 2년 50%	3년 100% + 2년 50%
과세이연	(신설)	-	-	-
적용기한	(신설)	2027.12.31.	2025.12.31.	2028.12.31.
구 분	배준영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개 정	
감면대상	(세액감면) 창업·신설 기업 (과세이연) 이전기업	입주기업	(세액감면) 창업·신설 기업 (과세이연) 이전기업	
감면율	5년 100% + 2년 50%	5년 100% + 5년 50%	5년 100% + 2년 50%	
과세이연	수도권 종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수도권 종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기한	2026.12.31.	2030.12.31.	2026.12.31.	

(5)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회수가 곤란한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방식으로 손금산입 허용
 - 내용: 2022년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해 2024년부터 매년 10%씩 대손충당금 설정을 통한 손금산입 허용
 - 요건: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경과, 해외건설자회사의 자본잠식* 10년 이상
 - * 자산 - 부채 ≤ 0
- 개정 취지: 해외건설업체의 수주지원 및 진출기업의 대손 위험 완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대상이 되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등의 규모 및 특례에 따른 손금 조기인식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주요 논의사항

- 현지 사정에 따라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해외건설자회사의 대여금 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안과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함
- 손금산입 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 범위, 손금산입 요건, 손금산입 방식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대상채권)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가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포괄 가능하다는 입장
 - (손금산입 요건) 당초 정부안은 시행령을 통해 해외자회사의 자본잠식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였으나, 특례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손금산입 방식) 발의된 3건의 의원안은 회수불능 채권을 5년간 직접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향후 청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손금산입 대상과 요건은 의원안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손금산입 방식은 정부안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10년간 10%)하도록 절충하여 개정됨
 - 해외자회사의 자본잠식 요건(10년)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정
 - 정부는 손금산입 대상에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가도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마련

[표 5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윤영석 의원안	조해진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대상채권	대여금, 미수이자, 용역대가	대여금, 미수이자	대여금, 미수이자
요건	해외자회사 10년 이상 자본잠식	해외자회사 10년 이상 자본잠식 (외부감사 2곳 이상 확인)	해외자회사 10년 이상 자본잠식 (외부감사 2곳 이상 확인)
손금산입 방식	5년간 손금산입	제각 후 대손금 인식한 금액을 5년간 손금산입	제각 후 대손금 인식한 금액을 5년간 손금산입
구 분	정부안		개 정
대상채권	대여금, 미수이자		대여금, 미수이자, 용역대가
요건	- 해외자회사 5년 이상 자본잠식(시행령 규정) -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경과		- 해외자회사 10년 이상 자본잠식(법률 규정) -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경과
손금산입 방식	10년간 10%씩 대손충당금 설정		10년간 10%씩 대손충당금 설정

[표 54] 법인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투자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조특법 제10조)	(법률에 명시된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 바이오의약품은 시행령으로 명시	(법률로 상향) - (추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취득기간 확대 (조특법 제12조의4)	(취득기간) -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기간) -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일까지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 '민간재간접투자'까지 확대 (조특법 제13조·제13조의2·제14조)	(대상 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추가)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을 통한 벤처투자도 현행 벤처투자 과세 특례 대상에 추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6)	(세액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기본</td> <td>3</td> <td>7</td> <td>10</td> </tr> <tr> <td>추가</td> <td colspan="3">없음</td> </tr> </tbody> </table>		대	중견	중소	기본	3	7	10	추가	없음			(세액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기본</td> <td>5</td> <td>10</td> <td>15</td> </tr> <tr> <td>추가*</td> <td>10</td> <td>10</td> <td>15</td> </tr> </tbody> </table> <p>*대상 영상콘텐츠는 국내제작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p>		대	중견	중소	기본	5	10	15	추가*	10	10	15
	대	중견	중소																							
기본	3	7	10																							
추가	없음																									
	대	중견	중소																							
기본	5	10	15																							
추가*	10	10	15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 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7)	(신설)	(수혜대상)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액) -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 × 3%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28조의4)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4.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조특법 제104조의15)	(대상) -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 광업권·조광권 관련 외국법인 지분투자 - 외국자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세액공제율) 3% (적용기한) - 2013.12.31.	(대상 및 세액공제율) - 현행 (적용기한) - 2026.12.3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완전복귀·수도권 밖 부분복귀) - 5년 100% + 2년 50% (수도권 내 부분복귀) - 3년 100% + 2년 50% (업종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후 의 업종이 동일할 것(시행령 규정)	(완전복귀·수도권 밖 부분복귀) - 7년 100% + 3년 50% (수도권 내 부분복귀) - 현행과 동일 (업종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 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의 유사성 을 확인 받는 경우 추가(법률로 규정)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제104조의33)	(신설)	(대상채권) - 대여금, 미수이자, 용역대가 (요건) - 해외자회사 10년 이상 자본잠식 -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경과 (손금산입 방식) - 10년간 10%씩 대손충당금 설정
기업 구조조정 지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34조·제39조 · 제40조·제44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자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유예기간 연장 (조특법 제38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4년 거치 3 년 분할납부는 2024년 시행	(적용기한) - 2026.12.31. ※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4년 거치 3 년 분할납부는 2027년 시행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52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6·제21조의27·제21조의28·제21조의29·제21조의30·제121조의31)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2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64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5.12.3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33)	(신설)	(감면대상)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등 (감면율) - 5년 100% + 2년 50% (적용기한) - 2026.12.31.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34)	(신설)	(감면대상) -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기업* *수도권 내 3년(중소 2년) 사업 영위 (과세이연) - 종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신규자산 처분시 익금산입) (적용기한) - 2026.12.31.
지역특구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조의2·제99조의9·제121조의8·제121조의8·제121조의9·제121조의17·제121조의20·제121조의21·제121조의22)	(대상 지역) - 연구개발특구, 위기지역,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적용기한) - 2023.12.31.	(대상 지역) - (현행) (적용기한) - 2025.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조특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9호·제10호)	(신설)	(감면대상) - 평화경제특별구역내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감면율) - 창업기업: 3년 100% + 2년 50% - 사업시행자: 3년 50% + 2년 25% (적용기한) - 2025.12.3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제136조)	(신설)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10% 추가 적용
중소기업 지원·상생협력 강화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법인에 대한 추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8)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4.12.31.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30조의3)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66조·제67조·제68조)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적용기한) - 2023.12.31.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적용기한) - 2026.12.31.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9조의6·제99조의8)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산입 특례 기관에 금융회사 추가 (조특법 제104조의11)	(적용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적용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1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과세체계 정비		
수탁자 과세의 의무 적용 등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과세방식) - (원칙) 수익자 과세 - (예외) 요건 충족시, 수탁자 과세 선택 허용	(신탁소득 과세방식) - 요건 충족시 수탁자 과세 의무 적용
자본준비금 감액시 익금불산입 규정 정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 3% 재평가적립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 (삭제) - (추가) 합병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 3% 재평가적립금 - (추가)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 - (추가) 유상감자 시 주식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 보유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발생하는 이익 - (추가) 3%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변경 (법인세법 제76조의12)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 변경신고 사유가 생긴 이후 1개월 이내
연결법인 간 세액배분 조정 (법인세법 제76조의19)	(신설)	-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기준 마련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등 (법인세법 부칙 제15조의2)	(연결납세방식 포기) - (원칙) 최초 적용 후 5년간 포기 불가	(연결납세방식 포기) - (원칙) 현행 - (예외) '2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연결납세제도에서 합병시 구분경리 예외기준 적용 (법인세법 제113조)	(신설)	- 연결모법인 합병 시, 중소기업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합병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하도록 예외 신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합리화 (조특법 제100조의15·제100조의16·제100조의18)	-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적용 제한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적용 예외 신설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세무행정 정비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법인세법 제98조의4)	(경정청구 기한)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기한)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 신설 (법인세법 제98의8)	(신설)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 소득지급자(증권사·운용사)의 원천징수 의무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기한)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기한)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기 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세법 제75조의7)	(시행시기) - 2024.1.1.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2024.1.1.~2024.12.31.	(시행시기) - 2026.1.1.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2026.1.1.~2026.12.31. (단, 소규모사업자는 2026.1.1.~2027.12.31.)
수용 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조의7·제85조의9)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제99조의13)	(신설)	(대상금액)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특례내용) - 익금불산입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 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3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관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시행 유예 (법인세법 제75조의7)	(적용기한) - 2024.1.1.~2025.12.31.	(적용기한) - 2026.1.1.~2027.12.31.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유예 (조특법 제104조의5)	(적용기한) - 2024.1.1.~2025.12.31.	(적용기한) - 2026.1.1.~2027.12.31.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가. 총괄

- 소비세제 개정은 영세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맥주·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 자동연동 제도 폐지, 공제·감면 제도의 확대, 과세 대상 확대, 관세행정 효율화를 통한 제도 합리화에 중점
 - 맥주·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 자동연동 제도를 폐지하고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전기·수소버스 면제 대상을 확대함
 - 교육세 과세대상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매입자가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함
 - 관세의 경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하였음
- 맥주·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 자동연동 제도 폐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연장
 - 맥주·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을 폐지하는 대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맥주·탁주 세율: 직전연도 '세율×CPI 증감률의 70~130%'
 -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2023년과 동일),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의 ±30%
 -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개인·일반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제(일부 면제) 대신 환급(전체 면제) 특례를 신설하였음
 - 전기·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농어촌버스 추가
 - 그 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및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 과세대상 범위 확대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비철금속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 추가 등

□ 관세행정 효율화 및 관세 분야의 납세자 권익 보호

-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품목분류체계(HS CODE) 수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우회덤핑 방지제도 등을 도입함
-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물품의 용도에 따라 적용될 세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을 신설함
- 또한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세무사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마약 관련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 그 밖의 조세제도 정비

-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4,800~8,000만원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내더라도 간이과세 재적용 허용 등

나. 주요 논의사항

(1) 맥주·탁주 주세율의 변경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맥주·탁주 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의 근거 마련
- 개정 취지: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세 과세체계의 합리화 도모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19년 탁주·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¹⁸⁾ 종량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음
 - 종량세율을 물가에 연동한 것은 소주 등 기존 종가세 주류와의 형평성 제고 목적
- 2022년 탁주·맥주 주류가격 안정을 위해 매년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변경

18) 종량세 전환은 종가세 하에서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표준(가격)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 가격변동지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를 적용한 가격변동지수(3.57%)를 적용함

[표 55] 맥주·탁주 주세율 연혁

	~2019.12.31.	2020.1.1.~ 2021.2.28.	2021.3.1.~ 2022.3.31.	2022.4.1.~ 2023.3.31.	2023.4.1.~ 2024.3.31.
맥주	(가격 기준) 72%	(리터당) 830.3원	834.4원	855.2원	885.7원
탁주	(가격 기준) 5%	(리터당) 1.7원	41.9원	42.9원	44.4원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 조정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 정부안의 취지는 매년 물가에 따른 세율 인상 및 주류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물가 반영이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을 통해 세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과 같은 물가 급등 시점에 주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안대로 의결됨
- 다만 물가연동과 관련하여 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되면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향후에는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정책 재설계에 앞서 주세 정책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알코올 소비 억제 및 건전한 음주 문화에 대한 기여, 소비자의 주류 선택의 다양성 확보, 주류 산업 육성, 세수 확보와 관련한 주세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세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등도 고려될 필요

[표 56] 맥주·탁주 주세율 변경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맥주 및 탁주 세율 변경	- (대상) 종량세 적용 맥주·탁주 - (물가연동) 매년 - (서울) 직전연도 12월 31일 서울 × (1+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CPI 증감률의 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 현행 서울: ('23.4.1.~'24.3.31.) 맥주 885.7원, 탁주 44.4원 (리터당)	- (대상) 맥주·탁주 - (물가연동) 폐지 - (서울) 기본세율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 (탄력세율)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 (대상) 맥주·탁주 - (물가연동) 폐지 - (서울) 기본세율 맥주 885.7원, 탁주 44.4원(리터당) - (탄력세율)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① 현행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조기 종료하고, ② 택시운송사업용(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포함)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적용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 적용기한: 2025.12.31.)
 -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적용대상: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 적용기한: 2025.1.1. ~ 2027.12.31.)
- 개정 취지: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 지원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12년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도입 후,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됨
- 2022년 세법개정 시 동 특례와 관련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¹⁹⁾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원활한 택시 공급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안, 의안번호 2117556/ 윤영석의원안, 의안번호 2117802)

영세율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 세수효과

○ (2025년) -830억원* (연평균) -849억원 (2024~2028년) -3,394억원

* 2025년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동 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

□ 주요 논의사항

- 영세한 택시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현행보다 강화된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기본적인 조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 간이과세자인 일반택시도 영세사업자이므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가 수용하여 환급대상이 확대됨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 규정 예정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 환급대행자를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아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급대행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당 내용이 추가됨

[표 57]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면제	(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025.12.31.	(대상) - 현행 - (적용기한) 2024.12.31.	(대상) - 현행 - (적용기한) 2024.12.31.
환급	(신 설)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 규정	택시운송사업용(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으로 간이 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 규정
		(방법) 환급대행자(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를 통해 신청 (신 설)	(방법)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 또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 (환급대행자 의무)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2025.1.1.~2027.12.31.	2025.1.1.~2027.12.31.
적용 기한			

(3)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수소 운송사업용 버스에 농어촌버스 추가
- 개정 취지: 농어촌버스회사 경영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5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제도는 1999년 8월부터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하였다가 2004년 1월부터 천연가스 마을버스, 2014년 1월부터 전기 시내·마을버스, 2019년 1월부터 수소 시내·마을버스로까지 확대
 - 동 제도는 1999년 8월 제정 당시 4년 기한(2003년 말까지) 예정으로 시행되었다가 적용기한이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됨(2003년 말 이후 5차례에 걸쳐 3년 연장 후 2018년 말부터는 2차례에 걸쳐 2년 연장되었다가 2022년 12월 현행 적용기한인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

□ 세수효과

- (2024년) -20억원 (연평균) -13억원 (2024~2028년) -65억원

□ 주요 논의사항

- 운송사업자용 친환경버스 관련 여타 제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도 시내·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대상범위로 하는 점이 고려되는 등, 여타 법률 및 정부 정책 간 정합성, 농어촌버스회사에 대한 경영 지원 등이 감안되어 정부안이 의결됨
-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대상으로 농어촌버스에 더하여 시외버스까지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음

[표 58] 전기·수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면제 대상 추가	(면제대상) - 운송사업용 전기·수소 시내·마을버스	(면제대상) - (현행)	(면제대상) - (현행)
	(신설)	- 운송사업용 전기·수소 농어촌버스	- 운송사업용 전기·수소 농어촌버스
	(적용기한) - 2025. 12. 31.	(적용기한) - (현행)	(적용기한) - (현행)

(4)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대상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 개정 취지: 금융기관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관련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보완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교육세 납세의무는 1982년 교육세 재시행²⁰⁾ 당시부터 일반 및 특수 은행, 일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자산운영업자), 보험회사, 환전영업자, 금전대부업자에게 부과되기 시작함
-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교육세 납세의무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게도 확대되고,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등 유사 금융업종 간 과세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 세수효과

- (2024년) -1억원 (연평균) -31억원 (2024~2028년) -153억원

20) 1958년 8월 교육세 신설 후 1961년 12월 폐지하였다가, 1981년 12월 목적세로 다시 신설하여 한시적 시행(5년 기한, 1986년 12월 연장) 이후 1990년 12월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

□ 주요 논의사항

- 정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납세의무자로 추가하여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보험판매수수료가 금융업에 따른 수익이 아닌 보험대리업에 따른 수익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함에 따라²¹⁾ 금융업자의 수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률하에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임
 - 은행의 보험대리업에 따른 보험판매수수료는 상기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²²⁾에 따라 금융업에 따른 수익으로 보아 교육세가 부과되었음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2003년 8월 개정 「보험업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4월 및 2006년 10월 판매 보험상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논의과정에서 동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납세의무자로 추가되어 보험회사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정부안대로 의결됨
 - 정부는 현행 과세정책 기조에 따라 금융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과세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정책적 차원에서 비과세하는 대신, 담세능력 및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과세하고 있다고 함
- 온라인대부업자²³⁾의 납세의무자 추가는 대부업 관련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는 기존 「교육세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했으나, 2020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관련법에서 온라인대부업자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누락되는 입법미비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견 없이 정부안대로 의결됨
- 논의과정에서 교육세가 이질적 세원을 기반으로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이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됨

21) 2021.2.25. 선고, 대법원 2020두54098

22) 금융세제과-61, 2018.2.2.

23) 구 「대부업법 시행령」에서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규정되었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

[표 59] 교육세 납세의무 금융·보험업자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납세의무 금융·보험 업자 추가	- 은행 등 - 보험회사 - 대부(중개)업자	- (현행) -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	- (현행) -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

(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개정 취지: 농어민 등의 영농·영어비용 등을 경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6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15년 3년 연장(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
- 2018년 3년 연장(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 2021년 2년 연장(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 (2024년) -1조 1,985억원 (연평균) -1조 267억원 (2024~2028년) -4조 1,067억원
- 동 세수효과는 간접세 감면 대상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주요 논의사항

- 농·임·어민이 직면한 열악한 경영상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몰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임·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일몰 폐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연례적인 일몰 연장에 앞서 농·임·어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현 제도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연료비 지원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절감 저하 및 대체에너지 보급 속도 저하 등의 영향도 고려해 지원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됨
- 우선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현행 감면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제도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안대로 의결됨

[표 60]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김주영·이기구 의원안	송언석·양경숙·류성걸·김수흥· 서삼석·윤미향·안호영 의원안, 정부안	
적용기한	2023.12.31.	2025.12.31.	2026.12.31.	
구분	서영교·김형동 의원안	윤준병·윤재갑· 홍문표 의원안	조해진 의원안	개 정
적용기한	2027.12.31.	2028.12.31.	폐지	2026.12.31.

(6)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만큼 매입세액 공제 적용
- 개정 취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5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1993년 10/110의 공제율로 특례 도입 후, 거래 불투명성 및 이로 인한 세수손실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적용기한이 연장됨

[표 61]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 연혁

구분	1993~2001년	2002~2006년	2007~2013년	2014~2015년	2016년~현재
공제율	10/110	8/108	6/106	5/105	3/103

□ 세수효과

- (2024년) -1,955억원, (연평균) -1,838억원 (2024~2028년) -5,515억원
※ 동 세수효과는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

□ 주요 논의사항

- 동 특례는 당초 재활용 폐자원의 수집활동을 지원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자원 양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2021년 심층평가에서 재활용 촉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므로, 일몰 종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은 이루어졌으나, 현시점에서 동 특례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안대로 의결됨

[표 62]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적용기한	2023.12.31.	2025.12.31.	2025.12.31.

(7)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기존 덤프방지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우회덤핑 물품: 덤프방지관세 부과 물품²⁴⁾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물품
 - 개정안에 따라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새로운 덤프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 덤프방지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잠정조치²⁵⁾ 및 약속²⁶⁾ 미적용
- 개정 취지: 우회덤핑과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신속히 규제하여 덤프방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현행법은 우회덤핑과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물품 특성, 생산지 또는 선적지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하여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프 여부 및 산업 피해를 조사한 후 새로이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등²⁷⁾ 적시 대응이 곤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요 논의 사항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성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하였음
- 다만, 정부안은 우회덤핑 행위 판단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외국기업이 비교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실행하는 정상적인 무역 행위가 우회덤핑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정부는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정상적인 무역 행위가 침해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계획

24) 덤프방지관세는 외국이 수출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판매하는 덤프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17개의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국산 에이치 형강 등의 물품에 덤프방지관세 부과

25) 잠정조치란 덤프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에게 담보 제공 등을 명령하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

26) 약속은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때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프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프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

27) 통상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됨

[표 63]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김주영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의 외관 또는 형태 등이 경미하게 변경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을 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물품 -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 조치 및 약속 미적용 - 우회덤핑 조사 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물품 -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 조치 및 약속 미적용 - 우회덤핑 조사 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 부과

[표 64] 소비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업종별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범위)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범위) - (현행) · (시행령)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를 적용기한 연장 (부가세법 제42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세법 제46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탁주·맥주 세율의 변경 및 생맥주 세율경감 3년 연장 (주세법 제8조)	(탁주·맥주 세율) -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산정 (생맥주 세율) - 맥주 세율의 80% (적용기한) - 2023.12.31.	(탁주·맥주 세율) - 탁주 44,400원/kℓ, 맥주 885,700원/kℓ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생맥주 세율) - 맥주 세율의 80% (적용기한) - 2026.12.31.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제105조의3 신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 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025.12.31. (신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 (현행) - 적용기한: 2024.12.31.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대상: 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025.1.1.~2027.12.31.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2)	(면세대상 전기·수소버스)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신설)	(면세대상 전기·수소버스) - (현행) - 농어촌버스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호)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 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호외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3호)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외5)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2제1항제1호)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의7)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8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11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11조의3)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3제10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5)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수협은행 등이 공급하는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5)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제126조의3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적용기한) - 일몰 삭제(항구화)
과세대상 및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확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업 · 보험업자에 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추가 (교육세법 제3조, 별표)	(납세의무 금융·보험업자) -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 보험회사 - 대부(중개)업자	(납세의무 금융·보험업자) - (현행) -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신설 (조특법 제106조의9 등)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 - 금 관련 제품 -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세금계산서 보전명령 근거) - (신설)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 - (현행) - 비철금속류(구리 포함)의 웨 이스트 및 스크랩 - (현행) (세금계산서 보전명령 근거) - 국제청장의 사업자 또는 수 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 성·제출 명령 권한
조세제도 정비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위임규정 신설 (부가세법 제8조제9항)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폐업한 경우 - 등록신청 후 사실상 사업을 시 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포함) - 등록신청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공급의 특례 대상 추가 (부가세법 제10조제1항)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 용·소비하는 것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 (현행) (신설)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비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것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규정 신설 (부가세법 제60조제1항)	(미등록 제재 대상 사업자)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미등록 제재 대상 사업자) - (현행) (신설)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가공(架空)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 (부가세법 제60조제4항)	(가산세 징수 주체) -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장	(가산세 징수 주체)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세법 제70조)	(신설)	- 간이과세를 포기신고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 재적용 가능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시기 관련 조문 용어 변경 (부가세법 제34조제3항, 제36조의2, 제62조)	- 1역월(1曆月) - 1역년(1曆年) - 부당한 방법	-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정한 행위
관세 관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업종요건 완화(조특법 제118조의2)	(업종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후의 업종이 동일할 것(시행령 규정)	(업종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의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 추가(법률로 규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18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6조의7)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관세법 제12조)	(납세자 등의 신고·제출자료 보관 의무) - 보관대상: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 보관방법: 장부·서류, 디스켓 등 정보보존장치(시행령)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 보관대상: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 추가 - 보관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공인전자문서센터 추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 제척기간) - 불복결정·소송판결: 결정·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경정처분 가능	(관세부과 제척기간) -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 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경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추가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관세법 제37조의4)	(자료요구 사유) - 세액심사 시	(자료요구 사유) - 관세조사 시 추가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법 제42조의2)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 6개월 초과 1년 이하: 1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0% -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법 제56조의2)	(신설)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 조치 및 약속 미적용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 입분부터 소급 부과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 적용대상)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 특별긴급·조정·할당·계절·국제 협력·일반특혜 관세 (전용물품 확인서 대체 대상) -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용도세율 적용대상) -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추가 (전용물품 확인서 대체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 은 경우
품목분류체계 수정에 관한 규정 정비(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 수정대상) - 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시행령) (수정사유) -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 정, 새로운 상품 개발 등 (수정내용) -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 목분류를 할 수 있음	(품목분류체계 수정대상) - 상항입법 (수정사유) -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 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수정내용) -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 시 분류할 수 있음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합리화 등 (관세법 제86조)	(신설)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 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관세 체납·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관세법 제116조의2)	(명단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 (현행) - 포탈관세액 2억원 이상인 조세 포탈범 추가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설 (관세법 제116조의6)	(신설)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및 관세사, 세무사 등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 심판청구 준용 규정 정비 (관세법 131조)	(심판청구 준용 규정) - 「국세기본법」 상 심판청구 규정(제67조~제81조) 일괄 준용	(심판청구 준용 규정) - 관세 심판청구와 관련한 심사청구 규정은 「관세법」 상 심사청구 규정을 준용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근거 마련(관세법 제161조)	(견본품 반출·채취 대상)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능	(견본품 반출·채취 대상) - (현행) -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능하도록 추가함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관세법 제164조)	(관리 의무사항) -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	(관리 의무사항) -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관세법」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를 기록·관리하도록 변경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관세법 제165조)	(보세사 자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미성년자 (보세사 등록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보세사 자격 결격사유) - (현행) - 미성년자 삭제 (보세사 등록 결격사유) - (현행) -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추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관세법 175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납세자의 명의대여죄에 해당하며 2년 지나지 않은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 (현행) - (현행) - 보세사의 명의대여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관세법 제206조)	(휴대품 유치 사유) - 수출입 관련 허가·승인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휴대품 유치 사유) - (현행) - (현행)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추가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관세법 제216조, 제277조)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등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 (현행)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의무 추가 -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관세법 제220조의2)	(신설)	-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는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항 내에서 국제무역선에 의하여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 (관세법 제224조)	(제재수단) - 명시적인 위임근거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시로 제재	(제재수단)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도록 명시적인 위임근거 추가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관세법 제246조의2)	(손실보상 대상) - 물품	(손실보상 대상) - (현행) - 포장용기·운반수단, 운송수단 추가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 제247조)	- 세관 공무원이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수수료 부과	(삭제)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 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관세법 제264조의11, 제266조의2)	(신설)	(마약밀수 단속 근거 마련) - 관세청장의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제출 요구 근거 마련 - 관세청장·세관장의 마약류 물품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근거 마련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관세법 제276조)	(제재 규정) -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 규정) -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관세법 제327조의2)	(신설)	- 공공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출연 법적 근거 마련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관세법 제327조의3)	(신설)	- 전자문서중계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FTA특별법 제12조, 제44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 인증요건 미충족 시 취소 가능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을 명시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관세청의 FTA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FTA특별법 제13조)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대상) - (현행) - 농·어업인 추가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 (FTA특별법 제35조의2)	(신설)	(보정이자 징수) - 기산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이자율: 정기에금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보정이자 면제)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 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세액보정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조문정비 (관세법, FTA특별법)	(관세법) -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 -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약속' 등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사항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 (FTA특별법) - '부당한 방법'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관세법) - '잠정덤핑방지관세액(또는 제공된 담보금액)' 과 같이 조문 명확화 - '상계조치'로 정의하는 등 정의 신설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 중 기존 조치 효력 유지에 관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FTA특별법) -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4 자산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등)

가. 총괄

- 자산세제 관련 개정은 혼인·출산 및 가업승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혼인 및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자녀 혼인 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하는 경우, 출생하는 경우, 혼인 및 출생하는 경우 등에 납세의무자가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와 관련하여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의 확대’ 등 가업승계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증여세 개정이 이루어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그 외에도 과세체계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금융시장 안정화 및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취득유형 명확화’ 등 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짐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가산세 부과)’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짐
 - 금융시장의 효율화·안정화 및 부실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연기금 등 차익거래 목적 주권 양도²⁸⁾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음

28)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기금관리주체가 장내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나. 주요 논의사항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혼인 및 자녀 출생시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함
- 개정 취지: 결혼비용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혼인 및 출산 장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세수효과

- 추정근란: 추계 기간의 혼인 및 출산시 증여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근란

□ 주요 논의사항

- 혼인장려를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안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짐
 - 최근 신혼집 마련 비용 등 급격한 결혼 비용의 증가는 혼인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
- 정부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격차 확대 우려 등 찬·반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혼인뿐만 아니라 출생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음

[표 65]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공제선택) 혼인시, 자녀 출산시, 혼인 및 자녀 출산시 등 공제 선택 가능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부터 2년 이내 - (반환특례) 혼인·출산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출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2) 가업승계세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함
-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 개정 취지: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투자·고용유인 제고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시행기준)

- (적용대상 확대) 2009년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나, 2011년 이후 매출액 요건을 만족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 매출액 요건: ('11년) 1천 5백억원 이하, ('13년) 2천억원 이하, ('14년) 3천억원 미만, ('22년) 4천억원 미만, ('23년) 5천억원 미만
- (증여가액 한도 확대) 2014년까지 증여가액 한도는 30억원이었으나, 2015년 이후 100억원, 2023년 이후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300~600억원으로 확대함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015년 이후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저율(10%) 과세, 2023년 이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까지 저율(10%) 과세 적용 등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함
 - 2014년까지는 가업승계에 대해 일괄 10% 증여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5년 증여가액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 (사후관리기간 축소) 2014년까지 10년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을 2022년 7년, 2023년 5년으로 축소함

[표 6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22년	2023년
적용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1.5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22년	2023년
증여가액 한도		30억원			100억원	가업영위 기간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세율		10%			과세표준별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30%	과세표준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기간		10년			7년	5년

□ 세수효과

○ 추정근란

- 추계 기간의 가업승계세제 저율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제 활성화, 투자·고용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정부안과 의원안을 병합 심사

○ 정부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의 지나친 확대는 가업승계라는 본래의 도입취지에 반하며,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함

○ 여·야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감안해 세제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불평등 격차 등에 대한 우려로 제안된 안보다는 확대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정

- 정부안 및 의원안과 같은 큰 폭의 확대(저율과세 구간 300억원 이하, 연부연납 기간 20년)보다 축소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음

[표 67]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 확대	세율: 10% (단,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 20%)		세율: 10% (단, 과세표준 300억원 초과분 20%)	세율:10% (단,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구 분	현 행	홍성국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기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허가일부 5년	허가일부 10년	허가일부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허가일부 20년	허가일부 15년

[표 68] 자산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혼인·출산지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제53조의2 신설)	(신설)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선택) - 혼인 및 자녀 출산(입양)시 공제 선택 가능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반환특례) - 혼인·출산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출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가업승계지원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조특법 제30조의6제1항)	(세율) - 10% 저율과세 구간: 60억원 이하	(세율) - 10%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
가업 및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배제 규정 (조특법 제30조의6제4항, 제71조제3항 신설)	(신설)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조세포탈 등이 있는 경우 가업승계 및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증법 제71조제2항)	(연부연납 기간) - 허가일부부터 5년	(연부연납 기간) - 허가일부부터 15년
과세체계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취득유형 명확화 (상증법 제42조의3)	(증여세 부과대상 과세범위 취득유형) - 추가	(증여세 부과대상 과세범위 취득유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추가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유형 변경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	(신설)	- 주식 5% 초과보유 공익법인: 1%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미달 사용액의 200% 가산세
공익법인 감리업무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상증법 제50조제6항)	(신설)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 공익법인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주요 내용	현행	개정
<p>기타</p> <p>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17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금 등 차익거래 목적 주권 양도 관련 (제5호) - 금융지주회사 설립목적 주식 이전·교환 관련 (제16호)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재무구조 개선기업 투자 관련 (제23호) - 기업간 주식등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관련(제24호) 	<p>(적용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2.31. 	<p>(적용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12.31.

5 기타세제(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가. 총괄

- (국세기본법)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등 국제조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시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
 -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
 - 그 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개정함
 - 한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추가',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에 대한 한도 적용' 등 가산세 규정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공매재산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 납부방식의 대금제도를 도입함
 - 압류금지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국제조세조정법)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²⁹⁾의 시행시기(1년 유예) 조정 및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을 반영한 보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과세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음
 - 또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시기 일원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가상자산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등 과세체계 합리화 방향으로 개정함
- (기타) 그 밖에 인지세는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였음

29)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소득산입규칙 미적용시(최종모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등)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

나. 주요 논의사항

(1)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보완규칙 시행시기 조정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함
 - 「국세기본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함
- 개정 취지: 주요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과세권 확보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추계 기간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이 되는 다국적 구성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사항

-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행할 경우 국내 투자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하였음
 -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행할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먼저 과세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 여·야 모두 동의
 -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EU, 영국, 일본 등 역시 2025년 또는 그 이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할 예정

[표 69]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시기 조정 등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소득산입 보완규칙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1.1. 시행	2025.1.1. 시행	2025.1.1. 시행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제기본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있음 을 안 날부터 1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있음 을 안 날부터 1년

(2)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법인세법」상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중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함
- 개정 취지: 현재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 해당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개정하여 개인과 법인간 일정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한도 적용에 대한 과세형평성 추구

□ 주요 논의사항

- 계산서 지연발급은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착오·실수로 인한 계산서 발급지연에 따른 세금가산을 구제하여 과잉제재를 해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표 70]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가산세 한도	(신설)	「법인세법」상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중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적용	「법인세법」상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중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적용

(3) 공매재산 취득시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공매재산 취득시 「민사집행법」상 경매제도의 상계처리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하고, 공매재산의 매각결정기일을 한차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정 취지: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신청인(매수인)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신속하게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함

□ 주요 논의사항

- 정부안의 취지에 공감하되 차액납부가 허용된 매수인의 배분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매수인이 해당 금액을 배분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매각결정이 바로 취소되는 정부안에 대해 매수인의 대금납부기한을 일부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연장을 허용할 경우 전액납부한 경우와 비교하여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길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

[표 71] 공매재산 취득시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신설)	공매재산 취득시 「민사집행법」상 경매제도의 상계처리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	공매재산 취득시 「민사집행법」상 경매제도의 상계처리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

[표 72] 기타 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국세기본법」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제26조의2)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압류 무효로 인한 압류 해제를 소멸시효 중단의 예외사유로 규정 (제28조)	(신설)	(소멸시효 중단의 예외사유)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 조문 명확화(제35조)	- 국세 우선 징수	-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에 한정하여 우선 징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3)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추가(제47조의4)	(신설)	(과소신고 등 가산세 적용제외)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적용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인하여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 경우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제49조)	(신설)	(한도 적용대상 가산세 추가) - 「법인세법」상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중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적용
조세불복 시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허용(제59조의2)	(국선대리인 신청) - 개인만 신청 가능	(국선대리인 신청) - 영세법인(수입금액(매출액)과 자산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신청도 허용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 및 조세심판관의 임명철회 사유 등 보완(제67조)	(신설)	-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 (1회 중임→1회 연임) - 심신쇠약, 비위사실, 직무태만 등의 경우에만 조세심판관의 임명을 철회·해촉하도록 명확화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 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기재해야 하는 사항 규정(제81조의13)	(신설)	(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제외 사유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미심사 결정 사유 추가 (제81조의15)	(신설)	(통고처분의 단서 신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미심사 결정사유 추가) -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경우
「국세징수법」		
가상자산 매각을 위한 이전요구시 체납자에 대한 통지규정 마련 (제55조제3항)	(신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체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 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신설 (제43조,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 압류 절차를 명확히 규정 전자등록주식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명의자의 경우에 대한 압류절차 등 규정
압류 즉시 해제 사유 신설 (제57조)	(압류 즉시 해제 사유)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등 - (신설) - (신설)	(압류 즉시 해제 사유)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공매재산 취득자격이 없는 매수자에 대한 매각절차 정비(제84조)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제84조의2)	(신설)	(매각절차 정비)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공매재산 매수대금 상계제도) -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의 매수대금 상계제도(배분받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 신설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상향입법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제106조)	(민간위원 자격 규정) - 시행령상 위임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 의제규정) - (신설)	(민간위원 자격 규정) - 법률로 상향 (공무원 의제규정) -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행법」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시기 일원화(제16조제2항)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 대규모 법인은 국제거래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12개월 내 제출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 대규모 법인의 국제거래 자료를 일반 법인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일원화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제51조의2)	(신설)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 상호합의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및 기타 국제조세 협력과 관련된 이행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국제기관의 종사자 -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제58, 제59조, 제91조)	(신설)	(해외신탁 자료 제출) - 거주자,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부칙 제1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 소득산업보완규칙 2024.1.1.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 소득산업보완규칙 2025.1.1.
글로벌 최저한세 보완 입법 (제61조제1항제1호 등, 제62조제4항, 제66조제5항,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제70조제5항제2호 신설, 제7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등)	- 조문 정비 및 보완 입법	-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 등을 반영하여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등 16개 항목에 대한 보완 입법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인지세 (「인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과세문서 작성 시 작성일 당일 인지세 납부 의무 부여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 납부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청년 농어업인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 및 농·수협 조합원의 용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16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 10년 연장(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2024.6.30.	(유효기간) - 2034.6.3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¹⁾		
주류 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제7조)	(제한사유) - 임원 - 국세·지방세 5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	(제한사유) - 법인 임원에 대표자가 포함 됨을 명확화 -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내 주류 소분 판매 등 허용 명확화(제12조)	(주류 판매 면허취소 규정) - 주류를 가공·조작한 경우	(주류 판매 면허취소 규정) - 주류를 가공·조작한 경우 - 다만, 식품접객업 장소 내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은 허용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 포탈 기준금액 상향(제13조)	(취소사유 포탈금액 기준) - 탁주 5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200만원 - 주정 및 증류주 500만원 - 맥주 1천만원	(취소사유 포탈금액 기준) - 탁주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500만원 - 주정 및 증류주 1천만원 - 맥주 2천만원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제38조)	(과태료 부과 대상) - 주세보전 및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납세증명표지 없는 주류나 무면허 주류 소비·판매자 -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 - (현행) - (현행) - (현행)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주: 1)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이나,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

6 지방세제(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가. 총괄

- (지방세기본법)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포괄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은 정부안대로 개정하였으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45만원으로 상향하여 개정함
 - 그 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 징송자료 제출 근거 등 신설' 등도 정부안대로 개정함
- (지방세법) 민생안정 지원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였음
 -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 연장'이 정부안대로 개정되었으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의원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3개월로 축소하여 개정함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2천원 미만 소액 자동차세 징수 면제 신설', 지방세 부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리스방식 수입시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등이 정부안대로 개정됨
 - 그 외에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를 "취득당시가액"에서 "등록당시가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정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수정하여 개정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출산·양육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신설하였고,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
 -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정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감면의 주택 취득가액기준(12억원 한도)과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개정함

-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의원안 및 정부안이 원안대로 개정됨
- 이 외에도 농·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역개발 등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됨
- (기타) 이 외에도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 등 지방세징수 관련 정부안이 국세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또한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 연기'는 정부안대로 개정됨

나. 주요 논의사항

(1)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 신설
 - 개정 취지: 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출산(예정) 가구가 취득할 감면 적용대상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는 출산 가구가 취득하는 주택(가격 제한 없음)에 대한 취득세(최대 500만원)를 감면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며,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됨

- 심사과정에서 출산·양육 지원방안으로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와 지방세 감면 신설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취득세 감면 신설시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부담을 주나, 혜택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논의 결과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외에 조세지원도 필요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되,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 출산·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을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의 취득가액 기준과 동일한 12억원으로 설정

[표 73]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김교흥 의원안	신동근 의원안①	신동근 의원안②
감면대상	(신설)	18세 미만 1자녀 이상	18세 미만 3자녀 이상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요건	(신설)	(주택가격) - 조건 없음 (주택 수) -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3년내 1주택)) (거주의무) - 3년 거주 의무	(주택가격) -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 수) -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3월내 1주택)) (거주의무) - 3개월 내 거주 시작, 2년 거주 의무	(주택가격) -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 수) - 조건 없음 (거주의무) - 3년 거주 의무
감면내용	(신설)	(감면율) - 취득세 10~50%* *1명: 10%, 2명: 20%, 3명: 30%, 4명이상: 50% (감면한도) - 없음	(감면율) -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감면한도) - 500만원	(감면율) - 재산세 50% (감면한도) - 100만원
적용기한	(신설)	2024.12.31.	2026.12.31.	일몰 없음

구분	윤재갑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감면대상	18세 미만 1자녀 이상	'24년~'25년 자녀 출산 부모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 취득주택)	'24년~'25년 자녀 출산 부모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 취득주택)
감면요건	(주택가격) - 조건 없음 (주택 수) -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3년내 1주택)) (거주의무) - 3년 거주 의무	(주택가격) - 조건 없음 (주택 수) - 1가구 1주택 (일시적 다주택(3월내 1주택)) (거주의무) -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 의무	(주택가격) - 취득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수) - 1가구 1주택 (일시적 다주택(3월내 1주택)) (거주의무) -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 의무
감면내용	(감면율) - 취득세 30~80%* *1명: 30%, 2명: 40%, 3명: 50%, 4명 이상: 80% (감면한도) - 없음	(감면율) -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감면한도) - 500만원	(감면율) -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감면한도) - 500만원
적용기한	2024.12.31.	2025.12.31.	2025.12.31.

(2)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율 및 재산세 감면기간 조정 가능
- 개정 취지: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2023년 12월 기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안에 대해 심사 진행
- 논의 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표 74]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구자근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개 정
감면대상	(신설)	- 수도권 공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자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지방기업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증설 기업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증설 기업
감면내용	(신설)	- 취득세 100% - 재산세 10년 100% + 10년 50% - 등록면허세 100%	①취득세50%+50%(조례), 재산세 5년 100% +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 +25%(조례), 재산세 3년 100% + 2년 50% ②취득세50%+50%(조례),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③취득세50%+25%(조례), 재산세 5년 75%(수도권 5년 35%)	①취득세50%+50%(조례), 재산세 5년 100% +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 +25%(조례), 재산세 3년 100% + 2년 50% ②취득세50%+50%(조례),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③취득세50%+25%(조례), 재산세 5년 75%(수도권 5년 35%)
적용기한	(신설)	2026.12.31.	2026.12.31.	2026.12.31.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을 조정 가능
- 개정 취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국내복귀기업이 복귀 후 취득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사항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복귀하는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함

[표 7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감면대상	(신설)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감면요건	(신설)	-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세분류 기준)	-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세분류 기준)
감면내용	(신설)	- 취득세 50%, 재산세 5년 75% * (조례) 취득세 +50%p	- 취득세 50%, 재산세 5년 75% * (조례) 취득세 +50%p
적용기한	(신설)	2026.12.31.	2026.12.31.

[표 76] 지방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지방세기본법」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 (제47조)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출자자 주식·지분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 법률·정관에서 출자자 주식·지분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현행) - (단서 추가) 불복 진행에 따라 공매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외국법인 출자자의 주식·지분이 외국재산에 해당하여 압류·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제48조)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양수인) - 사업의 포괄 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양수인) - 사업의 포괄 양수인 중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제55조, 제56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30만원 이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45만원 이하
지자체장의 지방세 징수자료 제출 근거 신설 등 (제150조의2)	(지자체 지방세 징수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원규정) - (신설) - (신설) -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또는 상급 지자체에 소송참가 요청 가능	(지자체 지방세 징수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원규정)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징수의 관리·지원에 관한 방안 수립·시행 가능 -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징수자료 행안부에 제출 가능 - (현행)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제151조)	(신설)	(경영공시 의무) -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 결산서·임원 현황·인건비 현황 등
「지방세법」		
리스방식 수입시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제7조, 제15조)	(과세기준) - 모든 리스에 과세 *실무상으로는 “금융리스”만 과세	(과세기준) - “금융리스(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만 과세 규정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 개념 보완 등(제10조의3, 제22조의2)	- 취득당시가액: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	- 취득당시가액: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납세의무자, 위탁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주요 내용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으로 산정 - 다음의 장부 및 증거서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제20조제1항)	(신고·납부 기한) - 규정 없음 *실무상 3개월 이내로 운용	(신고·납부 기한) - 3개월 이내로 명시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 부칙 제3조)	(비과세 범위) - 법원 촉탁 등기 · 대상: 법인 · 등기유형: 법원 촉탁등기만 · 기타 예외사유: 법인 자본금 · 출자금 납입, 증자·출자전환 등기·등록 제외	(비과세 범위) - 「채무자회생법」상 모든 등기·등록 · 대상: 법인·개인 · 등기유형: 모든 등기·등록 · 기타 예외사유: 없음 *단, 아직 회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까지 소급 적용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 조정(제27조)	- 취득당시가액	-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
담배 밀반입 등의 경우 담배 소비세 납세지 조정(제50조)	(납세지) - 반입 장소 소재 지자체	(납세지) - 반입자의 주소지 소재 지자체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업무자 신설(제62조의2, 제152조)	- 166개 부과권자(특·광역시 및 시·군)가 각각 부과	-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 주소지 지자체장이 특별징수(지방교육세 포함)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103조의23)	(신설)	- 대상: 세액 100만원 초과 - 기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미이행 가산세 감경(제103조의24)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
연결집단 연결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근거 신설(제103조의37)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 - 법인별 당초 세액을 “법인별 과세표준 × (연결세액 / 연결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 - 연결세액이 0이 아닌 경우: (현행과 동일) - 연결세액이 0인 경우: 시행령으로 정산기준 마련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법인 특별징수 신설(제103조의52)	(신설)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법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준 및 세액 확정신고 기산세 특례 기한 연장(제103조61조)	(적용기한) - 2019~2022년 과세기간	(적용기한) - 2019~2024년 과세기간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제118조)	(분할납부 기간) - 납부기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기간) - 납부기간: 3개월 이내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제118조의2)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
2천원 미만 소액 자동차세 징수면제 신설(제137조)	(신설)	- 고지서당 2천원 미만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 소병분 납세의무자 명확화(제143조)	(납세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납세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세관장의 지방교육세 납입 절차 명시(제152조)	(지방교육세 부과·징수 등 의무) - 지자체장: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시 지방교육세 부과·징수 - 세관장: 담배소비세 부과·징수시 지방교육세 부과·징수	(지방교육세 부과·징수 등 의무) - 지자체장: (현행과 동일) - 세관장: 담배소비세 부과·징수·납입시 지방교육세 부과·징수·납입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 연장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	(적용기한) - 2021~2023년	(적용기한) - 2021~202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조례 감면 가능 범위) - 공익, 특정 지역 지원, 감염병 지원 등 열거 사항만 가능 (조례 감면 제한 대상) - 골프장·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원칙) 조례 감면 불가 (예외) “감염병으로 영업 금지된 경우” 조례 감면 가능 - 고시하는 사항: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지자체별 감면세액의 감면규모 총량 초과 시 지방세 감면규모 삭감 시기) - 다음 연도	(조례 감면 가능 범위) -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반적 허용 (조례 감면 제한 대상) - 골프장·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원칙) 조례 감면 불가 (예외) “감염병으로 영업 금지된 경우”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을 곤란한 경우” 조례 감면 가능 - 시행령 규정사항: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지자체별 감면세액의 감면규모 총량 초과 시 지방세 감면규모 삭감 시기) - 다음 다음 연도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자경농민의 농지·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귀농인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 보완(제6조제4항)	(추징대상) - 농지, 농지조성 임야	(추징대상) - 농지, 농지조성 임야,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7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9조제1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1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제12조제1항)	(감면요건) - 어업법인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요건)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법인 (적용기한) - 2026.12.31.
농업협동조합등의 농어업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 등 (제14조)	(감면대상) - 중앙회: 구매·판매사업용, 생산·검사사업용, 농어민 교육시설용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대상) - 중앙회(농협 외): 구매·판매사업용, 생산·검사사업용, 농어민 교육시설용 - 중앙회(농협): 농어민 교육시설용 (적용기한) - 2026.12.31.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제14조의3 신설)	(신설)	(감면대상)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용, 생산·검사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감면율) - 취득세 25%, 재산세 25% (적용기한) - 2026.12.31.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추징규정 신설 (제19조제3항)	(신설)	(추징 규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년내 직접 미사용, 직접사용 2년내 매각·증여·타 용도 사용시 -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중인 부동산: 1년내 위탁 미운영, 위탁운영 2년내 매각·증여·타 용도 사용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제19조의2)	(감면요건) -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 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요건) -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기한) - 2026.12.3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제20조)	(감면요건)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 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요건) -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기한) - 2026.12.31.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21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등(제29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국가유공자 등의 고유업무 부동산, 사업소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제29조제2항)	(감면대상)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	(감면대상)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추가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제29조제4항)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추가 *단, 감면율 50%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제36조의5 신설)	(신설)	(감면대상) - '24년~'25년 자녀 출산 부모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 취득주택) (감면요건) - 주택가격: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주택 수: 1가구 1주택 *일시적 다주택(3월내 1주택) - 거주의무: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의무 (감면내용) - 감면율: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 감면한도: 500만원 (적용기한) - 2025.12.3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제38조제4항)	(감면대상) -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 중 종 교단체가 개설한 의료법인	(감면대상) -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법인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외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제40조의3제3호)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지방대학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제41조제8항)	(신설)	(감면대상) -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가 신축하는 수익용부동산 또는 수익용토지를 매각하여 3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년 50% (적용기한) - 2026.12.31.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42조제3항, 제44조제3항)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제44조의2)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취득세 감면요건: “사용”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취득세 감면요건: “직접 사용”
기초과학연구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제45조의2)	(감면대상) -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감면내용) - 취득세·재산세 100%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대상) - 국방과학연구소,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추가 (감면내용) - 취득세·재산세 50% (적용기한) - 2026.12.3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47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제47조의5 신설)	(신설)	(감면대상) - 설치의무가 없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감면요건) -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감면내용) - 취득세 100% (적용기한) - 2026.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52조의2 신설)	(신설)	(감면대상)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태권도진흥재단 (감면내용) - 취득세·재산세 50% (적용기한) - 2026.12.31.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요건 변경 (제57조의2제3항)	(감면요건)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감면요건)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기업재무구조개선등에 대한 감면내용 변경 등 (제57조의3)	(감면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세·재산세 50% - 중소기업 재매입시 취득세 100%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내용) - (현행과 동일) - 중소기업 재매입시 취득세 100%(단, 종전 매각금액 한도) (적용기한) - 2026.12.31.
주거안정지원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제57조의4)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8조, 제78조제9항 신설)	(감면내용) - 벤처기업 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시행자: 취득세 50%, 재산세 50% -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 배제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 배제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자: 취득세 50%, 재산세 3년 50%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내용) - 벤처기업 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수도권 외 재산세 60%) -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외 재산세 60%)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증축자: 취득세 50%, 재산세 3년 50%(수도권 외 재산세 60%) (적용기한) - 2026.12.31. *단,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2025.12.31.(제78조제9항으로 조문 이관)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제58조의3)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2026.12.31. (감면 제외 유형 추가) - 그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0조제3항)	(감면내용)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외): 취득세 75%, 재산세 50%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취득세 75%, 재산세 100% (적용기한) - 2023.12.31.	(감면내용)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외): 취득세 50%, 재산세 50% (수도권 외 재산세 60%)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현행과 동일) (적용기한) - 2026.12.31.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제64조제4항 신설)	(신설)	(감면대상) - 친환경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의 선박 (감면내용) - 1등급: 취득세율 2.0%p 인하 - 2등급: 취득세율 1.5%p 인하 - 3등급: 취득세율 1.0%p 인하 (적용기한) - 2026.12.31.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제65조)	(적용기한) 2024.12.31. *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의 경우 2023.12.31.	(적용기한) 현행과 동일 *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의 경우 2024.12.31.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8조, 제177조의2)	(추징요건) -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매각·수출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 중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 -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 (최소납부) - 적용	(추징요건) -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매각·수출하지 않은 경우(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3년) *중고자동차 중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최소납부) -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한해 적용 배제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제71조의2 신설)	(신설)	(감면대상) -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시설용 부동산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감면내용) -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취득세 15%+10%(조례) -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40%+10%(조례)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추정요건 보완 (제75조의4제1항)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구에 대한 감면(제79조의2 신설)	(신설)	(감면대상) - 사업용 부동산 (감면요건) -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세분류 기준) (감면내용) -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 75% (적용기한) - 2026.12.31.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제80조의2 신설)	(신설)	(감면대상) - ① 특구내 창업기업 -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기업 - ③ 특구내 공장 신·증설 기업 (감면내용) - ①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 100%+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3년 100%+2년 50% - ②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 100%+5년 50%(조례) - ③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5년 75% (수도권 5년 35%) (적용기한) - 2026.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83조제1항)	(감면요건) - 취득세: 직접 사용 - 재산세: 요건 부재	(감면요건) - 취득세: (현행과 동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7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 (제92조제3항 삭제)	(감면대상)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감면내용) - 자동차세 100% 감면	(삭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인적피해자 감면 신설 (제92조제4항, 제5항 신설)	(신설)	(감면내용) - (사망자) 사망한 연도의 재산세(도 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개인분등)·자동차세 100% - (유족(배우자·부모·자녀)): 상동 +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 동산의 경우 취득세 (적용기한) - 없음
교환자동차에 대한 중복특례 적용(제180조)	(중복특례 배제 예외 항목) - 토지수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자동차납부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중복특례 배제 예외 항목) - 제작결함에 따른 교환 취득 추가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기한) - 2026.12.31.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제92조의2 신설)	(신설)	-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 가능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 (제102조, 제102조의2)	(이의제기 지자체장 미인용시) - 원안확정 → 배분실시	(이의제기 지자체장 미인용시) - 이의제기 부분 : 확정유보 → 배분유보 - 나머지 부분 : 원안확정 → 배분실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공매 매각대금 중 미배분금전의 예탁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 (제103조, 제103조의2)	(미배분 금전 예탁사유) - (신설) *종전에는 「국세징수법」 준용 (예탁금 배분근거) - (신설) *종전에는 「국세징수법」 준용	(미배분 금전 예탁사유) - 채권에 정지조건·불확정기한 부기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 배분계산서에 불복중 - 그 밖의 사유 미배분 (예탁금 배분근거) - 배분계산서에 대한 불복쟁송 확정 - 그 밖에 예탁 사유 소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 연기(법률 제17091호 부칙 제1조~제3조 등)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 - 2024.1.1.부터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 - 2025.1.1.부터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대안 반영된 안건은 총 33건
 - 「조세특례제한법」 1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 「소득세법」 5건, 「관세법」 4건, 「국세기본법」 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 각 1건

가. 「소득세법」

- 양식어업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정점식·고용진·하영제·이달곤·윤준병·신정훈·서삼석·배준영 의원안, 제12조제2호)
 -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고, 어업관련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상향조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시행령에서 5천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유동수 의원안, 제25조제2항)
 - 현재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의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확대하자는 의원안에 대해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시행시기를 2026년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정태호 의원안, 제59조의2)
 -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하는 원안대로 반영
- 자녀세액공제액 상향조정(강훈식·박광운·고용진·서영교·박성준·진선미·신동근 의원안, 제59조의2)

- 자녀세액공제의 자녀수별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다양한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만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현행)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시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 초과 시 35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고용진 의원안, 제164조의3)
 - 2024년 1월 1일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까지로 확대될 예정(2022년 말 개정)이며, 이에 대해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로 조정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심의과정에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법인세법」 제75조의7) 및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가 이루어짐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취득유형 명확화 등(류성걸 의원안, 제42조의3)
 -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법인을 통한 간접적 이익 포함을 명시하고,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는 의원안에 대해 후자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서삼석 · 윤영석 · 진선미 의원안, 제88조의5)

- 농어민 등이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류성걸 의원안, 제91조의22)
 -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100분의 60 이상 납입 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만기지급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안대로 반영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등(전재수·고용진·박성준·양금희·유동수·정태호 의원안, 제95조의2)
 -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³⁰⁾의 적용대상(소득기준),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다양한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공제율은 개정하지 않고,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에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로 1천만원 상향조정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배준영 의원안, 제99조의4)
 - 현재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는데, 적용대상 농어촌주택에 기회발전특구 소재 주택을 포함하는 원안대로 반영
 - * 대상 농어촌주택은 ①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②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③ 2003.8.~2025.12. 동안 취득 요건 동시 충족

30)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임차에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일정률(15%/17%)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배준영 의원안, 제121조의35)
 -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2025.12.31.까지 가입분에 대해 투자금액 3억원을 한도 함
-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정태호·진선미 의원안, 제126조의2)
 - 2024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의 공제율을 적용한 특별세액공제를 50만원 또는 7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상향 입법(정일영 의원안, 제10조)
 -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해 법률로 상향하도록 원안대로 반영
- 감염병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양경숙 의원안, 제99조의13)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지급받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신설(홍성국·박성민·배준영·이장섭 의원안, 제121조의33)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5~10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한 결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2026년 말까지 적용하는 배준영 의원안이 원안대로 반영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구자근·배준영·이장섭 의원안, 제121조의34)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12~20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한 결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기 위해 종전 수도권 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 후 차후 신규 자산처분 시 익금산입하도록 과세특례 신설하여 2026년 말까지 적용하는 배준영 의원안이 원안대로 반영
-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박정 의원안,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제10호)
 - 평화경제특별구역 창업기업(3년 100%, 2년 50%) 및 사업시행자(3년 50%, 2년 25%)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 적용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동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3)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홍영표 의원안, 제126조의3제1항)
 -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2025.12.31.)을 폐지하는 원안대로 반영

라. 「관세법」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배준영 의원안, 제116조의6)
 -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나 관세사 등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제3자에 통관취급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제3자: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 언론, 금융 등)
 - 제3자에 의한 신고 대행을 활성화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원안 취지를 고려하여 제3자에 통관업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함
 - 전송과정에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안대로 반영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김주영 의원안, 제224조)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원안대로 반영
 - 현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제재내용을 명시적인 법률의 위임 없이 개별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재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안, 제264조의11, 제266조의2)
 -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에 관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범화물이 아닌 마약류 물품에 한정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현행법상 개인정보 입수·활용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관세청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범화물의 효율적 감시단속을 위하여 위치정보(GPS 부착 등)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의원안은 우범화물 전체의 위치정보 수집근거를 규정하였으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마약류 물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안, 제327조의2)
 - 현행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며, 현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기관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공공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으로 개편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원안대로 반영
 - 한국관세정보원은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획·조사·컨설팅·연구·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하며, 이 범위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승계

마. 「국세기본법」

- 압류 무효로 인한 압류 해제시 이를 소멸시효 중단의 예외사유로 규정(김영선 의원안, 제28조)
 - 당초 압류가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여 압류가 해제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의원안에 대해 체제지구수정 후 반영
- 과세정보 요구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강준현·김승원 의원안, 제81조의13)
 -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 요구시 ‘문서’로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안은 과세정보 요구시 해당 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개인의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강준현 의원안: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문서에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 총 5가지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시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조항을 추가
 - 김승원 의원안: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제공한 과세정보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본연의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강준현 의원안으로 반영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김수홍 의원안, 제81조의15)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원안대로 반영

바. 「국세징수법」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김영선 의원안, 제57조)
 -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①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②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압류재산이 무가치한 경우, ④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압류 무효 사유로서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사. 「지방세법」

-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조은희 의원안, 제118조)
 - 재산세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아.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정우택 의원안, 제38조 제4항)
 -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도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원안대로 반영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강병원 의원안, 제47조의5)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신축(증·개축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 충전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김교홍·김용판 의원안, 제65조)
 - 자산 5조원 이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6년 연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정우택 의원안, 제68조 및 제177조의2)
 -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매매·수출용 중고자동차등을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하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의원안이 발의 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대상을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원안을 수정하여 반영
- 도시첨단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신설(최기상 의원안, 제71조제1항)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원안대로 반영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구자근·박성민 의원안, 제80조의2)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이전기업, 공장 신·증설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박성민 의원안이 원안대로 반영

[표 77] 의원발의안 중 개정개정에 반영된 안건의 심의 결과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p>「소득세법」</p> <p>양식어업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정점식·고용진·하영제·이달곤·윤준병·신정훈·서삼석·배준영 의원안, 제12조제2호)</p>	<p>(양식어업의 주업소득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각 5천만원 - (비과세 한도 규정) 시행령 	
	<p>(고용진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10억원(수입금액) - (비과세 한도 규정) 시행령 	<p>(수정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p>(하영제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10억원 - (비과세 한도 규정)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천만원 - (비과세 한도 규정) 시행령
	<p>(이달곤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각각 5천만원 - (비과세 한도 규정) 어로어업 시행령, 양식어업 법률 	
	<p>(윤준병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각 7천만원 - (비과세 한도 규정) 법률 	
	<p>(신정훈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각 1억원 - (비과세 한도 규정) 법률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p>(서삼석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 범위) 어로어업(원양어업 제외) 및 양식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소득 전액 - (비과세 한도 규정) 법률 <p>(배준영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 범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 (소득 비과세 한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5천만원 - (비과세 한도 규정) 법률 	
<p>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유동수 의원안, 제25조제2항)</p>	<p>(간주임대료 과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 - (추가)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의 3억원 초과분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p>(수정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분 - 시행일을 2026.1.1.로 수정
<p>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정태호 의원안, 제59조의2)</p>	<p>(공제대상 자녀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 및 손자녀 	<p>(원안반영)</p>
<p>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강훈식 · 박광온 · 고용진 · 서영교 · 박성준 · 진선미 · 신동근 의원안, 제59조의2)</p>	<p>(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1명/2명/3명이상: 15/30/30+30×(자녀수-2)만원 - 출생 · 입양공제: 첫째/둘째/셋째이상 30/50/70만원 <p>(강훈식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20/40/40+40×(자녀수-2)만원 - 출산 · 입양공제: 100/150/200만원 <p>(박광온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자녀1명당 50만원 - 출산 · 입양공제: 50/70/100만원 	<p>(수정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1명/2명/3명이상: 15/35/35+30×(자녀수-2)만원 *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현행 15만원 → 20만원)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p>(고용진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30/30+50×(자녀수-1)만원 - 출산·입양공제: 50/100/150만원 <p>(서영교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25/50/50+50×(자녀수-2)만원 - 출산·입양공제: 60/100/140만원 <p>(박성준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30/60/60+60×(자녀수-2)만원 - 출산·입양공제: 50/80/120만원 <p>(진선미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20/40/40+40×(자녀수-2)만원 <p>(신동근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25/75/75+100×(자녀수-2)만원 	
<p>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조정 (고용진 의원안, 제164조의3)</p>	<p>(제출주기) 매월 → 반기 (시행시기) 2024.1.1</p>	<p>(수정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제출 시행시기를 2026.1.1.로 연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p>타인기여 재산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취득유형 명확화 등 (류성걸 의원안, 제42조의3)</p>	<p>(증여세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기여 재산증가에 이익에 '취득 재산이 주식인 경우 법인을 통한 간접적 이익 포함 -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추가 	<p>(수정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반영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p>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서삼석·윤영석·진선미 의원안, 제88조의5)</p>	<p>(비과세 한도) - (한도) 1명당 1천만원→3천만원</p>	<p>(수정반영) - (한도) 1명당 1천만원→2천만원</p>
<p>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류성걸 의원안, 제91조의22)</p>	<p>(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허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만기일 이후 해지, 청년희망적금 해지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60% 이상 납입</p>	<p>(원안반영)</p>
<p>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공제율, 한도 상향 등 (전재수·고용진·박성준·양금희·유동수·장태호 의원안, 제95조의2, 제122조의3제3항)</p>	<p>(현행) - (공제대상)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소득·급여기준 및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15%, 단, 총급여 5.5천만원(종합소득 4.5천만원) 이하 17% - (기준시가·규모)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750만원 (전재수 의원안) - (공제율) 15%→16%, 17%→18% (고용진 의원안) - (소득·급여기준 및 공제율)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15%, 단,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17%</p>	<p>(수정반영) - (공제대상)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소득·급여기준)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15%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1,000만원</p>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p>(박성준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급여기준 및 공제율) 총 급여 9천만원(종합소득 8천만원) 이하 17%, 단,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20%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1,000만원 <p>(양금희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월세액에 관리비 포함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900만원 <p>(유동수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급여기준) 총급여 1억원(종합소득 8천만원) 이하 - (공제율) 자녀 수에 비례적용 (1~4명: 급여 및 소득별 20~30%)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1,200만원 <p>(정태호 의원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급여기준 및 공제율) 총 급여 9천만원(종합소득 8천만원) 이하 17%, 단 총급여 7.5천만원(종합소득 6.5천만원) 이하 20% - (공제대상 한도) 연 월세액 1,200만원 	
<p>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99조외4)</p>	<p>(과세특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동 농어촌주택 대상에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을 추가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p>(원안반영)</p>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p>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21조의35)</p>	<p>(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일정요건을 갖춘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은 10년 간 9% 분리과세 (2025.12.31.까지 가입분 대상, 투자금액 3억원 한도)</p>	<p>(원안반영)</p>
<p>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정태호·진선미 의원안, 제126조의2)</p>	<p>(정태호 의원안)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2023년 사용금액 105% 초과 분에 대해 5% 세액공제 - 공제한도 50만원 (진선미 의원안)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2023년 사용금액 105% 초과 분에 대해 5% 세액공제(전통 시장 10%) - 공제한도 70만원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p>	<p>(수정반영) -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p>
<p>「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p>		
<p>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 의약품 분야 상향 입법 (정일영 의원안, 제10조)</p>	<p>(법률상 대상분야) -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p>	<p>(원안반영) *현행 시행령 규정</p>
<p>감염병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양경숙 의원안, 제99조의13)</p>	<p>(대상금액)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특례내용) - 익금불산입</p>	<p>(수정반영) - (대상금액)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특례내용) 익금불산입</p>
<p>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신설 (홍성국·박성민·배준영· 이장섭 의원안, 제121조의33)</p>	<p>(홍성국 의원안) - 입주기업 3년 100% + 2년 50% (박성민 의원안) - 입주기업 5년 100% + 5년 50% (배준영 의원안) - 창업기업 등 5년 100% + 2년 50% (이장섭 의원안) - 창업중소기업 5년 100%</p>	<p>(수정반영) - (감면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 업기업 등 - (감면율) 5년 100% + 2년 50% - (적용기한) 2026. 12. 31.</p>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구자근·배준영·이장섭 의원안, 제121조의34)	(구자근 의원안) - 10년 100% + 10년 50% (배준영 의원안) - 이전기업 양도차익 과세이연 (이장섭 의원안) - 본사이전 등 10년 100% + 2년 50%	(수정반영) - (감면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기업* *수도권 내 3년(중소 2년) 사업 영위 - (과세이연) 종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신규자산 처분시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6. 12. 31.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박정 의원안, 제121조의17 제1항 제9호·제10호)	(감면대상) - 평화경제특별구역내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감면율) - 창업기업: 3년 100% + 2년 50% - 사업시행자: 3년 50% + 2년 25% (적용기한) - 2024. 12. 31.	(수정반영) - (감면대상) 좌동 - (감면율) 좌동 - (적용기한) 2025. 12. 31.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홍영표 의원안, 제126조의3제1항)	(적용기한) - 2025.12.31. → 일몰폐지(향구화)	(원안반영)
「관세법」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배준영 의원안, 제116조의6)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상대자: 납세자 본인, 관세사, 세무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정반영)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상대자에 통관업,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법인, 변호사 등을 추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 제재 위임근거 마련 (김주영 의원안, 제224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명시	(원안반영)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 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안, 제264조의11·제266조의2)	- 관세청장의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제출 요구 근거 마련 - 관세청장·세관장의 우범화물 위치정보 수집근거 마련	(수정반영) - 위치정보 수집 범위를 마약류 물품으로 한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류성걸 의원안, 제327조의2)	-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출연 법적 근거 마련	(원안반영)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국세기본법」		
압류 무효로 인한 압류 해제를 소멸시효 중단의 예외사유로 규정 (김영선 의원안, 제28조)	- 압류 무효로 인한 압류해제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예외사유로 규정	(원안반영)
과세정보 요구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강준현·김승원 의원안, 제81조의13)	(강준현 의원안) - 과세정보 요구시 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 명시 - 과세정보 요구시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조항을 추가 (김승원 의원안) - 과세정보 제공시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제공한 과세정보 현황의 정기적 점검·보고 규정 마련	(수정반영) - 과세정보 요구시 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 (김수흥 의원안,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제외 사유 중 단서 추가)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단,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제외)	(원안반영)
「국세징수법」		
압류 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김영선 의원안, 제57조)	(압류 즉시해제가 적용되는 압류 무효 사유 구체적 명시) -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압류재산이 무가치한 경우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수정반영) (압류무효 사유) -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지방세법」		
재산세 분할납부기간 확대 (조은희 의원안, 제118조)	- 분할납부기간: 6개월 이내	(수정반영) - 분할납부기간: 3개월 이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정우택 의원안, 제38조 제4항)	(감면대상 확대) -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	(원안반영)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p>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 (강병원 의원안, 제47조의5)</p>	<p>(감면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감면요건) -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감면내용) - 취득세 100% (적용기한) - 2026.12.31.</p>	<p>(수정반영) - (감면대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p>
<p>자산 5조원 이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김교흥·김용판 의원안, 제65조)</p>	<p>(김교흥 의원안) - (적용기한 연장) 2027.12.31. (김용판 의원안) - (단서조항 삭제) 자산 5조원 항공사업자에 대한 구분 삭제 - (적용기한 연장) 2029.12.31.</p>	<p>(수정반영) - (적용기한) 2024.12.31.</p>
<p>매매용 및 수출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정우택 의원안, 제68조·제177조의2)</p>	<p>(추징요건) - 매매용 중고 자동차등: 3년 이내 매각·수출하지 않은 경우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 수출용 중고 자동차등: 2년 이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최소납부) -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한해 적용 배제</p>	<p>(수정반영) - (추징요건) ① 매매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매각·수출하지 않은 경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3년)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 ②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 2년 이내 수출하지 않은 경우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제외</p>
<p>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신설 (최기상 의원안, 제71조의2)</p>	<p>(감면대상)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내용) - 취득세 35%, 재산세 25% 감면* * 감면율의 10% 내에서 조례로 추가경감 가능 (적용기한) - 2025.12.31.</p>	<p>(수정반영) - (감면대상) ① 도시첨단물류 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②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 (감면내용) ① 취득세 15% 감면*, ② 취득세 40% 감면* * 감면율의 10% 내에서 조례로 추가경감 가능 - (적용기한) 좌동</p>

안 건	의원발의안	심의 결과
<p>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구자근·박성민 의원안, 제80조의2)</p>	<p>(구자근 의원안) - (감면대상) 수도권 공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자 및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지방기업 - (감면내용) · 취득세 100%, · 등록면허세 100% · 재산세 100%(10년) + 50%(10년) - (적용기한) 2026.12.31.</p> <p>(박성민 의원안) - (감면대상)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증설 기업 - (감면내용) ①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 100%+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3년 100%+2년 50% ②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 100%+5년 50%(조례) ③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5년 75%(수도권 5년 35%) - (적용기한) 2026.12.31.</p>	<p>(수정반영) - (감면대상) ① 특구내 창업기업 ②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 기업 ③ 특구내 공장 신·증설 기업 - (감면내용) ①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 100%+5년 50%(조례) *수도권: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3년 100%+2년 50% ②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 100%+5년 50%(조례) ③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5년 75%(수도권 5년 35%) - (적용기한) 2026.12.31.</p>

2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35건의 주요사항이 국회에서 수정
 - 「조세특례제한법」 10건,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각 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징수법」 각 3건, 「소득세법」·「관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³¹⁾ 각 2건,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각 1건

가. 「소득세법」

- 자원봉사 용역 기부금 인정범위에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 봉사용역을 추가하려던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34조)
 - 현행 자원봉사 용역에 대한 기부금 인정은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만 적용되는데, 정부안은 이에 국가·지자체·학교·병원·전문모금기관과 같은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의 기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에서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양도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정(제95조)
 - 현행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그 외 경우보다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정부는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상태로 보유 하던 건물을 매도 직전에 주택으로 변경하여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제안
 - 정부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을 기존 공제액 산출의 근거를 ‘취득일~양도일’로 보던 것에서,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을 현행 자산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에서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개정하는 방안 제안*
 - * 다음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정함(①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공제율 적용한 금액, ②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3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이나, 본 절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한 것임

- 정부가 제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양도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 (보유기간별 공제율)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95조제2항 표1(1세대 1주택자 외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같은 조 제2항 표2(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따른 보유기간 공제율(최대 합계 40%)의 합으로 변경
 - (거주기간별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 적용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각각의 금액을 합산(공제율 합계 최대 80%)한 것으로 정함

나. 「법인세법」

- 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18조의4)
 -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5% 이상이지만, 정부는 해당 분야의 지원을 위해 지분율 요건을 2%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
 - 해외자원개발 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요건을 유지하기로 함

다. 「부가가치세법」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징수 주체 규정 방식을 법률 체계에 맞춰 수정(제60조제4항)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 주체를 현행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법상 다른 조문에서의 규정 방식과 동일하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하였음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혼인 외에 출산도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제53조의2)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대상을 혼인시 1억원 공제로 한정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혼인하는 경우, 출산하는 경우, 혼인 및 출산하는 경우 등에도 납세의무자가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
-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15년으로 축소 조정(제71조)
 -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던 것을 15년으로 축소 조정하였음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율을 미달지출액의 100%로 변경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200%로 수정(제78조)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 지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를 미달지출액의 10%에서 100%로 상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200%로 수정

마.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을 3년으로 수정(제18조)
 - 적용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연장기한을 3년으로 축소하기로 조정하였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을 3년으로 수정(제18조의2)
 - 적용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연장기한을 3년으로 축소하기로 조정하였음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월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제91조의19)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기간을 가입일 기준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일몰 3년 연장 외에 추가로 납입한도를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2025년부터)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동일인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규제강화 요건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정(제133조)
 - 조특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개 과세기간은 1억원, 5개 과세기간은 2억원인데, 정부안은 이에 단서를 신설하여 ①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동시에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본다는 것임
 -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용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조문에 추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분할 기한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라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도록 수정

(2)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를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이연하고자 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제104조의16)
 - 현행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체취득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개정안을 제출
 - 사학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과세이연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안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특례를 유지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³²⁾ 업종요건을 완화하면서, 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해당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104조의24, 제118조의2)
 - 정부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감면

32) 소득·법인세 감면 및 관세 감면

- 여기에 추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
- 해외건설자회사 손금산입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정부안에 대해 해외자회사 자본잠식 요건은 법률로 명시하도록 수정(제104조의3)
 - 해외자회사의 자본잠식 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엄격한 적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본잠식 요건(10년)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수정함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하는 정부안에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제132조, 제144조)
 - 신설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를 적용받도록 수정함

(3)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적용대상 및 환급신청 방법을 확대하는 것 등으로 수정(제105조의3)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특례 적용대상을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일반택시까지 확대함
 -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등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급대행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

(4) 「조세특례제한법」 - 자산세 분야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던 정부안을 축소하여 120억원 이하로 수정(제30조의6제1항)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현행 60억원)을 과세표준 30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음

바. 「관세법」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그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한 정부안을 5천만원으로 수정(제277조)
 - 정부안은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면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하였으나 이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현행은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부·기피한 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검사를 위반·거부한 자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이를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면서 그 과태료 상한을 국세와 동일한 수준인 5천만원으로 조정
- 시스템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제327조의3)
 - 정부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관세청에 의한 시정명령 부과 가능 대상으로 명시함
 - 노후화된 장비 등 부실운영으로 인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또는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청장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지정취소 등)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되도록 하는 의원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제외

사. 「국세기본법」

-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신청자격 대상에 영세법인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영세법인의 요건에 수입금액 외에 자산가액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제59조의2)
 - 현재 개인에게만 한정된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을 수입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세법인에게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영세법인의 요건에 수입금액뿐 아니라 자산가액 기준을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

아. 「국세징수법」

- 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신설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채납자가 특별계좌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제43조,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절차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채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정부안으로는 전자등록주식의 압류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압류통지서를 송달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조정
- 공매재산 취득 자격이 없는 매수자에 대한 매각 절차를 정비하는 정부안에 대해 차순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도 공매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수정(제71조)
 - 공매보증금 반환의 대상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추가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최고가뿐 아니라 차순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도 공매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정
- 국세채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상향 입법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 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제106조)
 -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국세채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민간위원에게 뇌물죄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률 규정을 함께 마련하도록 조정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³³⁾

- 주류 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대상 범위를 시행령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면허 재취득 제한사유인 국세·지방세 포탈의 최저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제7조)
 - 정부안은 제한 대상에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인을 추가하고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임원 범위에 대표자도 추가하는 내용임
 - 정부안에 대해 개정안의 임원 범위에 대표자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대표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국세·지방세 포탈로 처벌

3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2023.12.26. 기준)이나,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리함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면허 제한을 받은 경우 포탈금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함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 탁주·기타 발효주류의 기준금액을 추가 상향(제13조)
 - 정부안은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탁주 50만원에서 100만원, 기타 발효주류 200만원에서 400만원,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에서 1천만원, 맥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임
 - 현행 기준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탁주·기타 발효주류에 대해서는 탁주의 기준금액은 정부안의 100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기타 발효주류의 기준금액은 정부안의 400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함

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제73조제6항)
 - 국제조세조정법 제73조제6항 소득산입보완규칙 규정에서 ‘국내배분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제5항’을 잘못 인용하여 이를 삭제하는 인용조문 정비가 이루어짐

카. 「지방세기본법」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려던 정부안을 45만원으로 수정(제55조, 제56조)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타. 「지방세법」

-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의 개념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개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개념을 바꾸는 대신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제10조의3)

- 사실상취득가격의 개념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개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변경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를 “등록당시가액”으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수정(제27조)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현행 “취득당시가액”에서 “등록당시가액”으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특별징수의무자 권한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지방교육세 수시부과 특별징수 권한을 함께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제152조)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 권한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담배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에 대한 수시부과 특별징수 권한을 함께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
-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를 변경하며 법 시행 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법 시행 당시 타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부칙 제3조)
 - 법 시행 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법 시행 전 등기·등록하였으나, 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수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정

파.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문구를 구체화하도록 수정(제4조)
 - 조례에 따른 감면 범위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개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조정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주택 취득가액 요건을 추가하도록 수정(제36조의5)
 - 2024~2025년 중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가액기준 없음)에 대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주택 취득가액 요건을 12억원 이하로 규정
-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추정요건을 변경하는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고, 반환공여구역 내 창업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제75조의4, 부칙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3년 경과)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
 - 법 시행 전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정
- 특별재난지역 유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제92조)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정부안에 대해 “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표 78] 2023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수정 결과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소득세법」		
자원봉사 영역 기부금 인정 범위 현행 유지 (제34조)	(자원봉사 영역 적용대상 확대) - 특례기부금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 영역 추가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 (미반영)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조정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 건축물: 보유기간별 공제율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단서 신설) 비주택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1세대1주택은 다음의 공제율 합산하여 적용 - (보유기간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 공제율+주택 보유기간 공제율(공제율 합계 최대 40%) - (거주기간별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 - 202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해외자원개발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유지 (제18조의4)	(지분율 요건 완화) - 5% → 2%	- (미반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 좌동 - 공제한도: 좌동 - 공제선택: · 혼인시, 자녀출산시, 혼인 및 자녀출산(입양)시 등 공제선택 가능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제71조)	(연부연납 기간) - 20년	(연부연납 기간) - 15년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유형 변경(제78조)	(가산세) - 주식 5% 초과보유 공익법인: 1%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미달 사용액의 100% 가산세	(가산세) - 주식 5% 초과보유 공익법인: 1%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미달 사용액의 200%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제60조제4항)	(가산세 징수 주체)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가산세 징수 주체)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 분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제18조)	(대상) - 요건 중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외에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추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적용기한) - 2023.12.31.→ 2028.12.31	(대상) - 작동 (적용기한) - 2026.12.3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제18조의2)	(적용기한) - 2023.12.31.→ 2028.12.31 (비과세 미적용 대상) - 단일세율(19%) 적용 시 미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사택제공 이익 등) 제외	(적용기한) - 2026.12.31. (비과세 미적용 대상) - 작동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월 납입한도 상향 (제91조의19)	(적용기한) - 2023.12.31.→ 2026.12.31.	(적용기한) - 작동 (월 납입한도) - 40만원→55만원(2025년부터)
동일인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제 강화 (제133조제2항)	(감면 종합한도) - (단서 신설) 토지의 일부 또는 지분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배우자 포함)에게 양도 시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감면 종합한도) - (단서 신설)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분할한 경우)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또는 배우자)에게 양도 시 1개 과세기간 내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미반영 (제104조의16)	(특례 내용 변경) - 현행 3년 거치 + 3년 분할임금에서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으로 변경	(미반영)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업종요건 완화(제104조의24, 제118조의2)	(업종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의 유사성을 확인 받는 경우 추가(시행령으로 규정)	(업종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에서 업종의 유사성을 확인 받는 경우 추가(법률로 규정)
해외건설자회사의 자본잠식 요건 법률에 명시 (제104조의33)	(해외자회사 자본잠식 요건) - 시행령(5년)으로 규정	(해외자회사 자본잠식 요건) - 법률로 10년 명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및 이에 대한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적용 (제25조의8·제132조·제144조)	(신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 미적용	(신설) - 좌동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소비세 분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신설(제105조의3)	(적용대상) - 개인택시 (환급신청 방법) -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 (신설)	(적용대상) - 개인택시+일반택시 (환급신청 방법) -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 또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 (환급대행자 의무) - 택시운송 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조세특례제한법」 - 자산세 분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제30조의6제1항)	(세율) - 10% 저율과세 구간: 과세표준 300억원 이하	(세율) - 10% 저율과세 구간: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
「관세법」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제277조)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	- 과태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제327조의3)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	- 전자문서중계사업자만 대상에 해당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공공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이 담당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자도 함께 조정 - 좌동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국세기본법」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허용되는 영세법인 판단기준 추가 (제59조의2)	(영세법인 판단기준) - 수입금액	(영세법인 판단기준) - 수입금액과 함께 자산가액 규정
「국세징수법」		
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신설(제43조,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압류시 통지기관) - 전자등록주식 압류시 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 또는 예탁자·계좌관리기관	(압류시 통지기관) - 현행 동일. 다만, 전자등록주식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명의자인 경우 통지기관(명의개서대행회사) 추가
공매재산 취득자격이 없는 매수자에 대한 매각절차 정비(제71조)	(공매보증금 반환대상 추가) - 최고가 매수신청인	(공매보증금 반환대상 추가) - 매수신청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상향입법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제106조)	(자격규정) - 민간위원 자격규정	(자격규정) - 민간위원뿐 아니라 공무원 위원에 대한 근거규정도 추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 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제7조)	(제한 사유) - 법인 임원에 대표자 포함 - 국세·지방세 5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	(제한 사유) - 법인 임원에 대표자(시행령에 상 세 조건 규정 위임) 포함 -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 (제13조)	(취소사유 포탈금액 기준) - 탁주 1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400만원 - 주정 및 증류주 1천만원 - 맥주 2천만원	(취소사유 포탈금액 기준) - 탁주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500만원 - 주정 및 증류주 1천만원 - 맥주 2천만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납입보완규칙 인용 조문 정비(제73조제6항)	(인용조문 정비) 제73조(소득납입보완규칙의 적용) ⑥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제5항에 따라 각 사업 ...	(인용조문 정비) 제73조(소득납입보완규칙의 적용) ⑥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 ...
「지방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제55조, 제56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40만원 이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 45만원 이하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지방세법」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 개념 보완 (제10조의3)	(사실상취득가격)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	(사실상취득가격)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 지급하는 주체 명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기액 기준시기 조정(제27조)	- “취득당시기액”을 “등록당시기액”으로 변경	- 취득당시기액과 등록당시기액 중 높은 금액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특별징수의무자 권한 신설 (제152조)	- 담배소비세에 대한 수시부과 특별징수의무자 권한 신설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특별징수의무자에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에 대한 수시부과 특별징수 권한 함께 신설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부과세 범위 변경(부칙 제3조)	-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 부과세 및 그 예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법 시행 전 등기·등록하였으나, 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수행 중인 경우도 개정 규정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 변경(제4조)	-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제36조의5)	(주택 취득가격액 요건) - 없음	(주택 취득가격액 요건) - 취득당시기액 12억원 이하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추징요건 변경 (제75조의4, 부칙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 법 시행 전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현행 유지) - 법 시행 전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특별재난지역 유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신설(제92조)	(감면내용) - (사망자) 사망한 연도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개인분등)·자동차세 100% - (유족(배우자·부모·자녀)): 상동 +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적용기한) - 없음	(취득세 면제 대상) - 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1 부대의견

- 국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총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가.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7건

(1) 소득세 분야 부대의견: 1건

- 자녀장려세제 확대 관련(한병도 의원안, 정부안)
 -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정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녀장려세제를 계속 조세지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질의하며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자녀 출생·양육과 관련한 각종 재정지출·조세지출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2) 법인세 분야 부대의견: 5건

-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관련(정일영·구자근·이정문·유의동 의원안)
 - 법률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시행령을 통해 개정하더라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방안 관련(이정문·김상훈·윤영석 의원안)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외의 세제지원 방법 및 기술분야에 대한 타법(「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의 불일치 문제 등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3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포괄 범위가 상이한 문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분투자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과 지분투자 형식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증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관련(양기대·박상혁 의원안)
 -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증설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규정을 수도권 내 노후시설 등의 설비전환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대체투자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도권 대체투자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부실조합·금고 등 재무구조 개선 지원 방안 관련(강준현 의원안)
 -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의 부실조합·금고 등 재무구조 개선 지원에 대하여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가 부실조합·금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지원금 지원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3) 부가가치세 분야 부대의견: 1건

-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등 검토 관련(김태년 의원안)
 - 2022년 정기회에서 세법개정 시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실태와 매입자 납부특례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및 면세점·여행업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및 국세청 협의, 업계 의견수렴³⁴⁾ 등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동일한 취지에서 부대의견 채택

34)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연구기간: 2023.3~7.), 국세청 협의(2023.11.1.), 업계 의견수렴(2023.11.13.)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등 면세점 및 여행업계의 송객용역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 「주세법」 부대의견: 1건

- 주세 과세체계 변경 및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을 통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관련(고용진 의원안)
 - 2020년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표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맥주·탁주의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였으나 그 외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외부효과 교정 및 적정 세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정책방향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전면적인 종량세 방식의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산 주류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다. 「교육세법」 부대의견: 1건

-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관련 과세형평성 확보방안 검토 관련 (정부안, 유동수 의원안)
 -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유가증권 관련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수익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손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파생상품 및 외환거래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형평성 문제 관련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과세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 「관세법」 부대의견: 1건

-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관련(고용진 의원안)
 -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부과방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관광산업 회복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매출액 기준 특허 수수료 부과방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표 79] 부대의견 채택 안건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조세 특례 제한법	소득 세 분 야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상향 등 (한병도 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자녀 출생·양육과 관련한 각종 재정지출·조세지출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법 인 세 분 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대상 분야와 「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의 일치(이정문 의원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환급 등 (김상훈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3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포괄 범위가 상이한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정일영·구자근· 이정문·유익동 의원안)	수정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전략기술사업 관련 외국법인 주식등 취득·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윤영석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과 지분 투자 형식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 제외 (양기대·박상혁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도권 대체투자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상호금융기관이 부실조 합 등 지원 시 과세특례 (강준현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가 부실조합·금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지원금 지원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 비 세 분 야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매입자 납부특 례 제도 신설 (김태년 의원안) ¹⁾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등 면세점 및 여행업계의 송객용역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주세법	증류주류 세율의 종량세로 전환 및 중소기업 제조 주류에 대한 세율 경감(고용진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전면적인 종량세 방식의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산 주류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세법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순손익으로 변경(유동수 의원안)	미반영	
관세법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고용진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관광산업 회복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부과방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주: 1) 2022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2023년 정기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음

2 향후 논의과제

□ 출산·자녀 양육 지원수단으로서 조세지원제도의 적절성 관련 논의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2년 기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나,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 심사과정에서 조세지출 제도를 통해 출산·양육을 지원할 경우, 면세자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고소득자에게는 한계세율만큼 혜택이 있는 등 비과세·감면제도의 특성상 역진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1인당 소규모의 조세지원보다는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이에 정부는 출산·양육 관련 각종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지원제도에 대해 각 제도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자녀 출생·양육과 관련한 각종 재정지출·조세지출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주세 세율 조정 및 종량세 전환 등 과세체계 개편 관련 논의

-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주세 물가 연동분의 인상 및 이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변경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안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국산·수입 주류 간 과세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으며, 동시에 증류주 종량세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
- 국회 심사과정에서 주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물가 연동을 통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잦은 정책 변경 및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납세자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음
- 참고로, 2020년 맥주·탁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 시 나머지 증가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물가 급등기를 거치며 2023년에는 물가 반영폭을 축소한 데에 이어 올해 국회 심사를 통해 2024년부터는 자동 물가반영을 폐지하고 필요 시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추가로 증가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주·위스키·브랜디 등의 경우 여전히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표준 산정 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고, 알코올 소비 억제·소비자의 다양한 주류 선택권·주류 산업의 육성·세수 확보 등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현행 증가세 대상 주류의 종량세 과세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등과 같은 근본적인 개편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산 주류의 경우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된 제조장 판매가격에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수입 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시점의 가격에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산정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됨
- 증류주류의 과세체계를 종량세(알코올도수 구간별 과세)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주류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는 고용진 의원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량세 개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저도주 세부담 증가·고도주(수입산 등) 세부담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한 대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참고로 2020년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표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맥주·탁주의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으나 이후에도 세율 및 국산·수입 주류 간 형평성 등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정부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국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전면적인 종량세 방식의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산 주류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이후 정부는 2024년부터 기준판매비율 적용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장 반출가격×기준판매비율’ 만큼 국산 주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함³⁵⁾

※ 2024년 1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드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를 적용할 예정임³⁶⁾

35)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국세청장이 소속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율을 결정함(「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5호, 2023.12.14. 개정) 및 「주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25호, 2023.12.14. 개정))

36)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부터 적용할 예정(국세청 보도자료,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 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 2023.12.17.)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논의

- 202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우대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확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 제기
 -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신성장·원천기술이었던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조속한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2023.7.1. 이후 지출하는 연구개발 및 투자비용 등부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시행함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 제도 시행 중
- 이에 심사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세제지원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는 원칙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추가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 외에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환급 및 제3자 양도제도 도입 필요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포괄 범위가 상이한 문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과 지분투자 형식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관련 논의

- 2024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2.3%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비과세·감면 확대 및 일몰연장 법안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율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이에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의결된 법안을 고려하여 국세감면율 변화를 재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세감면율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이에 개별 법안의 세수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음
- 향후 세법개정에 따른 국세감면율의 추가적인 상승 및 법정한도 초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총액을 집계하고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을 재계산해서 검토하는 방식 등 이를 사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양도소득세 법 조문 체계 정비 관련 논의

-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계산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없고, 잦은 개정 과정에서 조세탈루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별도 규정들이 추가되면서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 국민은 물론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정부는 기수행한 연구용역³⁷⁾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양도세 개편방안에 대해 2024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양도세 계산 방법 및 주요 특례제도에 대한 요약 규정 신설 방안을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동 개편의 필요성에 여·야 의원들이 적극 공감하며 정부안대로 의결
 -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계산과정을 서술하고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또한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소득세법」 제92조제2항 등)하고 관련 시행령 또한 개정 예정(2024년)
 - 한편 조세소위에서 정부는 현재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업한 개정안을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음
- 여·야 의원 모두 복잡하고 난해한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에 동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금번 조세소위에서 보고한 대로 2024년 정기국회에는 양도소득세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37)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법무법인 율촌,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양도소득세)(2022.8)

□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논의

-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 가업승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사과정에서 여·야 의원은 정부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금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안 심사 시 여·야는 등 개정안의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더해 상속세 체계 개편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는 단편적인 개편에 대한 우려 제기
 - 동 개정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과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 효과성 검증 없이 전년에 이은 추가적인 가업승계 세부담의 대폭 완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함에 따라 정부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정
 - 이와 함께 여·야는 가업승계뿐만 아니라 상속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정부 역시 상속세제 전면 개편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여·야 모두 전면적인 상속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정부는 금번 조세소위에서 보고한 대로 2024년 정기국회에는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필요
 -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공제제도 개편 등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제시할 필요
- 참고로 2020년 세법개정 시 국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편 관련 보고’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후, 상속세제 전면 개편과 관련된 연구 및 논의가 진행 중임
 - (2020.11.) 2020년 세법개정 시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함
 - (2021.11.) 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은 향후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제출·보고
 - (2022.10.)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TF)’이 출범하여 연구 및 논의가 진행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부 록
-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1 2024년 총수입

- 2024년 총수입 예산은 612.2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3년 본예산(625.7조원)대비 13.5조원(△2.2%)이 감소한 수준
 -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367.3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400.5조원) 대비 33.2조원(-8.3%) 감소
 - 법인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및 자산 관련 세수 부진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의 감소가 예상
 - 2024년 세외수입 예산은 28.2조원, 2023년 본예산(25.0조원) 대비 3.2조원(13.0%) 증가
 - 예금 잔액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 등에 따른 우정사업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
 - 2024년 기금수입 예산은 216.7조원, 2023년 본예산(200.3조원) 대비 16.4조원(8.2%) 증가
 - 가입자 소득 증가 및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증가(6.2조원, 7.2%)와 연금기금의 운용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금수입 증가 예상

[표 80]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단위: 조원, %)

	2022 실적	2023 본예산	2024 확정예산	2023 본예산 대비	
					(%)
총수입	617.8	625.7	612.2	-13.5	-2.2
국세수입	395.9	400.5	367.3	-33.2	-8.3
세외수입	30.8	25.0	28.2	3.2	13.0
기금수입	190.8	200.3	216.7	16.4	8.2
- 사회보장기여금	83.4	86.1	92.3	6.2	7.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가. 총수입

- 2024년 총수입은 612조 2,14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612조 850억원)에서 1,297억원 증액
 - 국세수입은 367조 3,14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610억원 감액
 - 자녀세액공제 확대(-645억원)로 인한 감액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변경으로 인한 증액(+35억원) 등
 - 세외수입은 28조 1,959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2,894억원 증액
 -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1,200억원) 및 질병관리청의 기타경상이전수입(국고보조금 미집행 반납액, 1,720억원) 등을 증액
 - 기금수입은 216조 7,048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비해 987억원 감액
 - 기후대응기금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989억원) 등을 감액

[표 81] 2024년 총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3	2024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예산	2023 본예산 대비	%
총수입	6,256,751	6,120,850	1,297	6,122,147	-134,604	-2.2
국세수입	4,004,570	3,673,750	-610	3,673,140	-331,430	-8.3
세외수입	249,519	279,065	2,894	281,959	32,440	13.0
기금수입	2,002,662	2,168,035	-987	2,167,048	164,386	8.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국세수입

- 2024년 국세수입은 367조 3,14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610억원 감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득세는 감액한 반면, 증여세는 증액
 -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액(-645억원) 및 기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 증액(+35억원)

[표 82] 2024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3	2024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2023 본예산 대비	%
총국세	4,004,570	3,673,750	-610	3,673,140	-331,430	-8.3
일반회계	3,902,539	3,561,792	-610	3,561,182	-341,357	-8.7
○ 내국세	3,579,676	3,216,746	-610	3,216,136	-363,540	-10.2
1. 소득세	1,318,632	1,258,250	-645	1,257,605	-61,027	-4.6
2. 법인세	1,049,969	776,649	-	776,649	-273,320	-26.0
3. 상속세 및 증여세	171,274	146,531	35	146,566	-24,708	-14.4
4. 부가가치세	832,035	814,068	-	814,068	-17,967	-2.2
5. 개별소비세	101,943	101,945	-	101,945	2	0.0
6. 증권거래세	49,739	53,829	-	53,829	4,090	8.2
7. 인지세	8,158	8,505	-	8,505	347	4.3
8. 과년도수입	47,926	56,969	-	56,969	9,043	18.9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71	153,258	-	153,258	41,787	37.5
○ 관세	107,237	89,065	-	89,065	-18,172	-16.9
○ 교육세	47,022	61,625	-	61,625	14,603	31.1
○ 종합부동산세	57,133	41,098	-	41,098	-16,035	-28.1
특별회계	102,031	111,958	-	111,958	9,927	9.7
○ 주세	32,151	35,759	-	35,759	3,608	11.2
○ 농특세	69,880	76,199	-	76,199	6,319	9.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세외수입

- 2024년 세외수입은 28조 1,959억원으로 정부안(27조 9,065억원)에 비해 2,894억원 증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의 예결산 추이를 반영하여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과 기타 경상이전수입 등을 증액
 -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1,200억원) 및 질병관리청의 기타경상이전수입(국고보조금 미집행 반납액, 1,720억원) 등을 증액

[표 83] 2024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3	2024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2023년 본예산 대비	%
세외수입	249,519	279,065	2,894	281,959	32,440	13.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기금수입

- 2024년 기금수입은 216조 7,048억원으로 정부안(216조 8,035억원)에 비해 987억원 감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의 예결산 추이 등을 반영하여 987억원 감액
 - 기후대응기금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989억원) 등을 감액

[표 84] 2024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3	2024			증 감	
	본예산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2023년 본예산 대비	%
기금수입	2,002,662	2,168,035	-987	2,167,048	164,386	8.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일 2023년 12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744)

ISSN 3022-3032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531-002055-10

ISSN 3022-3032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